

선	기관위원장
람	

제1584호 2021. 3. 15(월)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43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44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45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1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46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	-----	1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47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	1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48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2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49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	2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50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	3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51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	---	3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52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3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53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4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54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	64

차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55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 —— 6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5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7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5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7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58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 7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59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 — 84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1019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 86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1020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 92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44호 2021년 녹색제품 구매계획 공표 고시 ----- 94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4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정정 고시 ----- 99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46호 지적기준점성과 복구고시 ----- 104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4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0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48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109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4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120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6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29

차 례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6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3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68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5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6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6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70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6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71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28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3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43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지역 차원에서 앞장서 실현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행복”이란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안녕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주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모든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주민의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주민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
2.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4.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외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행복지표 등) ① 구청장은 주민 행복 수준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행복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한다.
- ③ 구청장은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지수 측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행복 증진과 관련한 조사 및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개발된 행복지표 측정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변경
3. 그 밖에 주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공동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구민 행복 증진과 관련된 시민단체, 여성단체, 노동단체, 청소년단체, 노인 단체, 문화예술계, 체육계, 학계 등 행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활동 지원과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본다.

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업무소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행복영향평가)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그 계획이 주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계획이나 사업이 주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행복영향평가”라 한다)하고 이를 정책 및 사업추진의 의사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예산 운영) 구청장은 구의 예산이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검토하여,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행복증진교육) ① 구청장은 구와 그 산하기관, 구의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정,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행복 증진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행복지표 개발·측정과 제14조에 따른 행복영향평가 및 제16조에 따른 행복 증진 교육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위탁운영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주민 행복증진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 국내·국외 관련 기관 또는 단체·대학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3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44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단장을 다르게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지원팀
 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 ② 본부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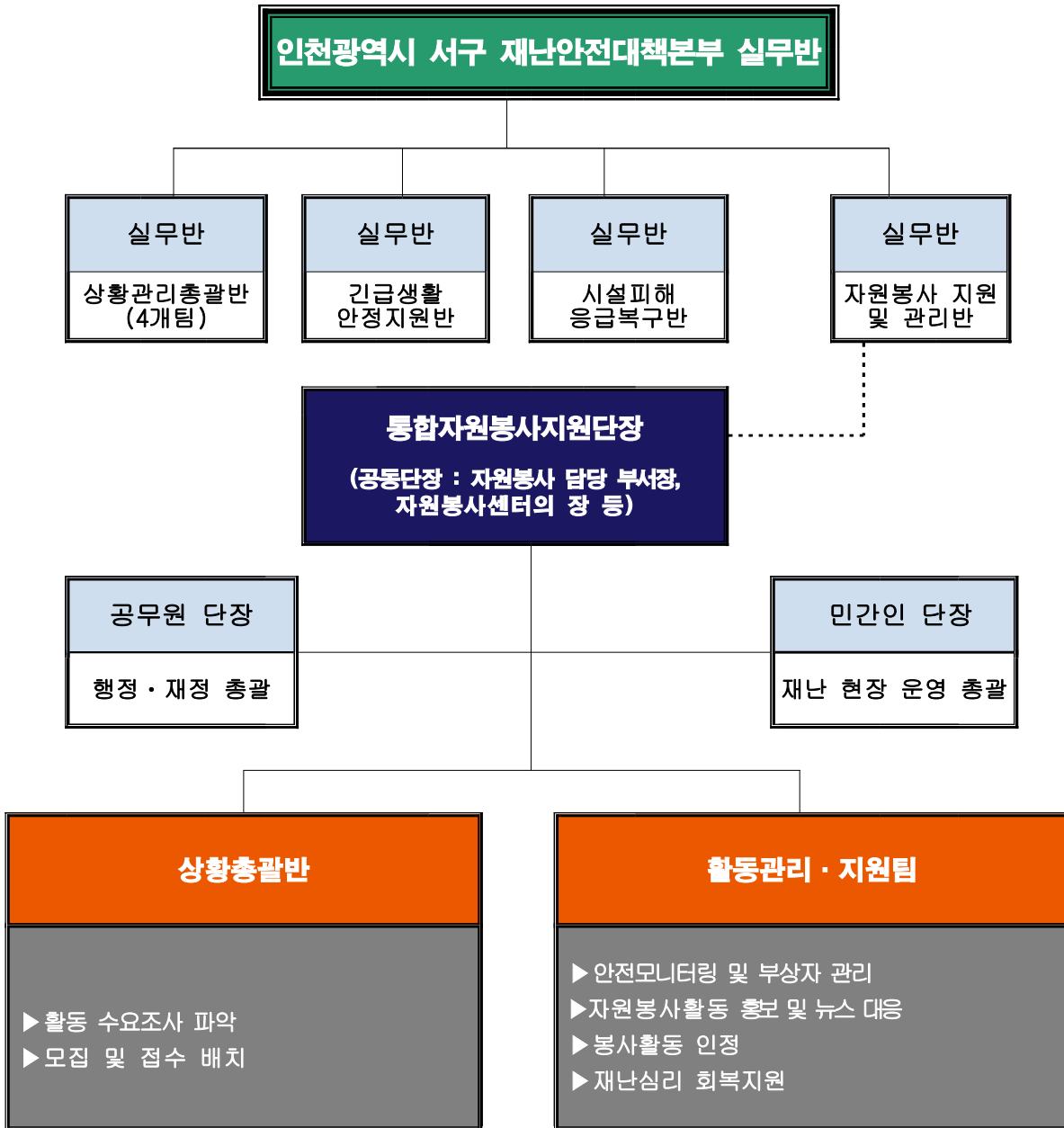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팀 명		직 위	담당 사무
공무원단장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사항 총괄 ▶ 기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관련 사항 지원
민간인단장		서구자원봉사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총괄
실 무 팀	상 황 총괄팀	서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자원봉사 담당부서의 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연계 (상황 공유·보고 등)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활동관리 지원팀	서구자원봉사센터 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총괄
		서구자원봉사센터 운영요원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사항 총괄
		서구자원봉사센터 운영요원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기록 및 피해자 불편사항 접수
		서구자원봉사센터 운영요원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3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45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80(검암동)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제2조 중 별표의 관할구역과 같다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 12(연희동)	
청라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58(청라동)	
청라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269(청라동)	
청라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89(청라동)	
가정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64번길 11(가정동)	
가정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 267번길 10(가정동)	
가정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79번길 12-16(가정동)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35번길 3(신현동)	
석남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294번길 17(석남동)	
석남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 116(석남동)	
석남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07(석남동)	
가좌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12번길 10(가좌동)	
가좌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309번길 4(가좌동)	
가좌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57번길 4(가좌동)	
가좌 4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80번길 14(가좌동)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29번길 14(마전동)	
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14(불로동)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24(원당동)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67번길 19(당하동)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42(왕길동)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0번길 14(마전동)	

〔별표〕

구청 및 동 청사 소재지(제2조 관련)

구 분	소 재 지
서 구 청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80(검암동)
연 희 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 12(연희동)
청라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58(청라동)
청라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269(청라동)
청라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89(청라동)
가정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64번길 11(가정동)
가정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 267번길 10(가정동)
가정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79번길 12-16(가정동)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35번길 3(신현동)
석남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294번길 17(석남동)
석남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 116(석남동)
석남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07(석남동)
가좌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12번길 10(가좌동)
가좌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309번길 4(가좌동)
가좌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57번길 4(가좌동)
가좌 4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80번길 14(가좌동)
검 단 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29번길 14(마전동)
블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14(블로동)
원 당 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24(원당동)
당 하 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67번길 19(당하동)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42(왕길동)
마 전 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0번길 14(마전동)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3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46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등학생”을 “대학생”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녀로서”를 “자녀이면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학생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을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 학기 성적이 평균 5등급 이상인 사람이거나 검정고시의 경우 시험성적이 평균 75점 이상인 사람

2.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4.5 만점 기준으로 2.5점 이상인 사람
3. 복학생은 휴학 등으로 인한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4.5 만점 기준으로 2.5 점 이상인 사람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서 학비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 및 보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기준”으로, “조정하여 매 학기 개시(開始)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를 “조정하며,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학생 심사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후 동점자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되, 학교 간 및 동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 생활이 어려운 통장(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통장으로 재직하면서 최근 2년간 수혜이력이 적은 순서
3. 학년이 높은 순서

③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시 우선 선발될 수 없다. 다만, 장학생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 후 순위로 조정하여 선발될 수 있다.

제6조 본문 중 “공납금 전액으로”를 “연간 100만원 이내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공납금”을 “금액”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학금은 학기별로 장학생 본인에게 지급하거나 해당 통장 또는 가족관계 상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발적인 휴학 등으로 해당 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중단한 경우는 복학 시에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3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47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 제4조”를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으로 한다.

제8조 중 “물품”을 “물품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가정의 달 및 경로의 달 행사”를 “어버이날, 가정의 달 행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노인의 날, 경로의 달 행사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예산 등의 지원)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노인복지증진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시기 등 세부기준은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기준표(제13조 관련)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시기
1. 노인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실비	매월
2. 노인교실(대학) 운영	수강생	간식, 수학여행(소풍) 경비	운영 시
3. 노인 무료급식 지원	저소득층	식사 또는 부식	수시
4. 100세 이상 노인 지원	100세 이상 노인	물품, 상품권	설날, 추석
5. 어버이날, 가정의 달 행사	행사참여자	식사, 기념품, 교통 편의	행사 시
6. 노인의 날, 경로의 달 행사	행사참여자	식사, 기념품, 교통 편의	행사 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3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48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등급 외(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한다. 다만, 지원한 성인용 보행기가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 1대까지 교체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등을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회수) 허위, 중복,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 또는 양도 시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연락처			
신청인	성 명		대상자와의 관계	
	주 소			
	연락처			
담당자 작성	①건강상태	※ 거동 불편 정도(혼자 외출 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 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장기요양등급 등 질환 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②경제상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 등		
	③지원상황	※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노인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

연 번	대상자명	생년월일 (6자리)	주 소	신청자명	대상자와의 관 계	신청일자	지급일자	비 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3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49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1항”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만료전”을 “만료 전”으로 한다.

제3조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해당하며, 근로가 가능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과 자체 수익을 통한 임금지급이 가능한 자립형 사업장을 목표로 한다”를 “장

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해당한다.”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설치 및 운영목적) 시설은 근로가 가능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 및 자체 수익을 통해 임금지급이 가능한 자립형 사업장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며 나아가 장애인이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시설의 운영) 시설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시설의 위탁방법)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위탁신청서류)”를 “(위탁신청서류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을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선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위탁운영”을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으로 한다.

제13조를 제6조의2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

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수탁자 선정은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탁자 선정심의회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 ② 수탁자 선정 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공신력
 2. 재정부담능력
 3. 사업수행 능력, 실적, 인력, 기술 등
 4. 지역사회와 협력관계 조성능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들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한다. 단, 동일 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3(위·수탁기간등) ①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구청장과 수탁자 간의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수탁자의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성실히 운영하는 등 구청장이 위탁의 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② 공개경쟁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령」 제19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재위탁 의사가 있는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수탁 여부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제5조제1항”을 “제5조”로 하고 제5항 중 “장애인복지담당과장”을 “장애인시설 담당”으로 한다.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4호로 한다.

1. 시설의 수탁자 선정 심사
2. 시설의 위탁 갱신 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위탁관리 능력 평가
3. 운영비 등 비용에 관한 적격성 심사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기구 및 인력)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시설운영비) ① 시설운영비는 사업수익금 및 수탁자부담금, 기타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

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에서 시설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시설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매 분기마다 정산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구에서 정산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3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50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반환기준은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일할계산으로 반환한다”를 “반환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설 사용료 반환은 사용 취소 요청을 신고한 날이 사용예정일의 3일 전일 경우 전액 반환하며 3일 미만인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 후 반환한다. 다만, 사용 개시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취소 요청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 후 사용일수를 제외

하고 일할계산으로 반환한다.

2. 사물함 사용료는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일할계산으로 반환한다.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나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는 전액 반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3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51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4. 아이사랑꿈터 운영 및 관리
5. 장난감 수리센터 운영 및 관리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경고, 임직원의 해임 요구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3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52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생활소음·진동”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소음·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온한 생활환경 보호를”을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로, “시행할 책무를 진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정온”을 “정온하고 쾌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생활소음”을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한다.

1.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정온”을 “정온하고 쾌적”으로, “이행할 책무를 진다”를 “이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정온”을 “정온하고 쾌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처리과정을 정온”을 “과정에서 정온하고 쾌적”으로, “소음”을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호(중전의 제4호) 중 “정온”을 “정온하고 쾌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조제2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소음 측정 표지판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주민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사전 안내 및 주민과 협의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음저감 실천으로 정온”을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으로 정온하고 쾌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온”을 “정온하고 쾌적”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공사장 소음 상시측정)”을“(공사장 소음 및 미세먼지 상시측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음에”를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에”로, “소음저감”을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저감”으로, “소음측정 기기”를 “소음 측정기기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음측정기기”를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을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대상”으로,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을 “설치위치,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명”으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로, “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를 “소음·진동공정시험기

준에 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을”을 “한다) 제73조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로 하며,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① 구청장은 건축물 해체·축조공사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에 대해 제2항과 제3항의 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사장 비산먼지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를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수시로 청소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도로먼지 억제) 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장은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미만 공사장의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장은 도시가스, 상수도·하수도 등 도로 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10조(종전의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

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 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규칙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종전의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온”을 “정온하고 쾌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소음”을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아침·저녁 시간대에 특정 장비를 사용하여 지나친 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4.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주민의 정신건강과 쾌적한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3조(종전의 제11조)의 제목 “(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를 “(사업자의 환경관리 자율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음에”를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에”로, “소음 관리목표”를 “관리목표”로, “등을”을 “체결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등을 통하여”를 “체결 등을 통하여”로,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10

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소음 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소음발생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3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53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정사업계 폐기물” 이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합성섬유,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제품 등과 같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로서 따로 구분하여 소각 등 별도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가정사업계 폐기물은 폐합성섬유,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폐기물 처리시설의 여건, 수거시간대 및 주민불편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 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동상차장치 부착, 수집·운반차량 특수성 및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1항, 제2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50리터 이상 일반용 봉투와 가정사업계용봉투로 배출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무게 이하로 배출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밀도는 0.25킬로그램/리터 이하로 제한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별표 3”을 “별표 3의1”로 한다.

- 가. 일반용봉투 50리터: 13킬로그램
- 나. 가정사업계용봉투 60리터: 15킬로그램
- 다. 가정사업계용봉투 125리터: 32킬로그램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설치 및 분리 보관)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 분리보관시설 또는 보관 용기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시설의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별표 3의2의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은 3의1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별표 6의1, 별표 6의2, 별표 6의3 및 별표 9는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제작된 100리터 일반용 종량제봉투의 사용 기한은 이미 제작된 100리터 일반용 종량제봉투 소진 시까지로 하며, 판매가격 및 배출무게에 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수료(제2조, 제13조)

품목	규격	수수료(원)
가스오븐레인지	1m 미만	2,000
	1m 이상	4,000
가스히터	모든규격	5,000
거울	반신거울(소)(1m 미만)	2,000
	반신거울(대)(1m 이상)	5,000
고무통	대	5,000
골프가방	모든규격	5,000
기타(악기)	모든규격	3,000
난로	석유	4,000
다리미판	모든규격	2,000
다용도 수납장	전자렌지, 쌀통용	4,000
돗자리	모든규격	5,000
	마작대자리(2인이상)	10,000
레인지후드	모든규격	2,000
마네킹	반신용(머리 포함)	3,000
	전신용	5,000
문갑(거실장)	모든규격	6,000
	돌문갑	10,000
	유리(부착)문갑	10,000
문짝	목재	4,000
	철재	5,000
문틀	소(높이 1.6m 미만)	3,000
	대(높이 1.6m 이상)	5,000
물탱크(FRP 제외)	2.5톤 미만	30,000
	2.5톤 이상	50,000
바둑판	소(얇은 판)	1,000
	대(두꺼운 판)	2,000
밥상	다과상	2,000
	소(1.2m 미만), 4인용 미만	3,000
	대(1.2m 이상), 4인용 이상	4,000
방충망	소(창문)	3,000
	대(문)	4,000
변기	모든규격	5,000
병풍	모든규격	5,000
보드	모든규격	3,000
부츠	모든규격	3,000
블라인드	쪽당	5,000
빨래건조대, 행거(옷걸이)	모든규격	3,000
빨래판	모든규격	2,000

품목	규격	수수료(원)
사무용칸막이(파티션)	모든규격	5,000
서랍장	5단 미만	6,000
	5단 이상(3단양수 포함)	8,000
	미용실, 금은방용	10,000
세면대	모든규격	5,000
소파	유아용	3,000
	소파테이블	3,000
	보조소파(스툴)	5,000
	1인용(개당)	5,000
	2인용(개당)	6,000
	3인용(개당)	10,000
	4인용(분리불가)	11,000
	4인용(2인용 두개)	12,000
소화기	카우치	10,000
	3.3kg 이하	3,000
	10kg 이하	5,000
수도호스	20kg 이하	7,000
	10미터 당	1,000
수족관(어항)	소(1m이하)	3,000
	중(1.5m이하)	5,000
	대(1.5m초과)	8,000
스탠드벽시계	모든규격	5,000
스키	모든규격	3,000
식탁	6인용 미만(의자 별도)	6,000
	6인용 이상(의자 별도)	7,000
	식탁(돌, 대리석)	10,000
	아일랜드(나무)	10,000
	아일랜드(대리석)	15,000
신발장	소(높이 1.5m 미만)	3,000
	대(높이 1.5m 이상)	6,000
실내운동기구	자전거(플라스틱)	5,000
	스피닝 자전거(금속류)	10,000
싱크대	소(1m 미만)	4,000
	대(1m 이상)	6,000
	상부장(플랜장,후드)	5,000
실링팬(전등)	모든규격	5,000
아이스박스	소(길이 50cm 미만)	2,000
	중(길이 1m 미만)	3,000
	대(길이 1m 이상)	5,000
안내카운터(데스크)	중(가로 1.5m 미만)	8,000
	대(가로 1.5m 이상)	10,000
안마의자	모든규격	10,000
액자	소(대각선 0.5m 미만)	2,000

품목	규격	수수료(원)
	중(대각선 1m 미만)	3,000
	대(대각선 1m 이상)	5,000
여행용가방	소(기내용)	3,000
	대(화물용)	5,000
오르간	모든규격	6,000
옥돌자석매트	모든규격	11,000
온수매트	1인용	9,000
	2인용	10,000
욕조	모든규격	10,000
우산	모든규격	1,000
유리(쪽당)	식탁 및 책상유리	3,000
	대(120cm이상)	5,000
	강화유리(샤워부스 칸막이 등)	10,000
유모차,보행기	모든규격	3,000
유아용 전동차	모든규격	5,000
유아용 카시트	모든규격	4,000
의자	모든규격	4,000
자전거	자전거(유아용)	3,000
	자전거(어린이)	4,000
	자전거(일반)	5,000
장롱(1쪽당)	프레임(틀)	5,000
	너비 90cm 미만	8,000
	너비 90cm 이상 ~ 120cm 미만	10,000
	너비 120cm 이상	11,000
장식장,진열장	소(길이 60cm 미만)	4,000
	중(길이 90cm 미만)	6,000
	대(길이 90cm 이상)	8,000
장판	5m 미만	4,000
	5m 이상	5,000
재봉틀	소	3,000
	대	5,000
전기장판	모든규격	6,000
창문	모든규격	3,000
책상	상판	3,000
	편수(외서랍, 무서랍)	6,000
	양수(양서랍)	7,000
	h형책상(상판, 책장,서랍 포함)	10,000
	사무용	10,000
책장(책꽂이)	3단미만	5,000
	3단이상	6,000
천막	가정용	6,000
침대(매트리스)	유아용 침대	3,000
	1인용	8,000
	2인용	9,000

품목	규격	수수료(원)
침대매트판	플라스틱1개당	2,000
	나무1개당	5,000
침대머리	모든규격	3,000
침대틀	1인용	3,000
	2인용(퀵사이즈 포함)	4,000
	유아용 침대	5,000
	2층침대틀	10,000
	돌침대(돌포함)	12,000
	모텔용	12,000
카펫	소(길이1.5m 미만)	5,000
	중(길이2.5m 미만)	7,000
	대(길이2.5m 이상)	12,000
칼라박스	모든규격	2,000
캐비닛	모든규격	5,000
고양이 타워	소(높이 1.5m 미만)	5,000
	대(높이 1.5m 이상)	10,000
타이어	600mm 이상	5,000
	1,100mm 이상	12,000
탁구대	모든규격	15,000
탁자	10인용 미만	5,000
	10인용 이상	9,000
테니스라켓	개당	1,000
텐트	가정용	2,000
팔레트(나무)	모든규격	5,000
폴더매트	3.3㎡(1평)당	8,000
피아노	전자피아노 소형	6,000
	일반(업라이트), 전자피아노	11,000
	대형(그랜드)	12,000
항아리(화분)	소(40cm 미만)	3,000
	중(70cm 미만)	4,000
	대(70cm 이상)	5,000
협탁(서랍없는)	모든규격	2,000
화장대	가정용	6,000
	업소용	10,000
화환		3,000
환풍기	가정용	2,000
	업소용	3,000
휠체어	모든규격	2,000

※ 상기 이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하며,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길이는 긴 면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1]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제7조 관련)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 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다. 유리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료수병, 기타 병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담배꽂초 등 이물질 넣지 않고 배출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p>※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p>
라. 금속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담배꽂초 등 이물질 넣지 않고 배출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p>※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p> <p>※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p>※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p> <p>※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다른 유색 플라스틱류와 혼합되지 않게 전용수거함에 배출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바. 합성수지 용기 · 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 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행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 · 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시대, 유모차 · 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사. 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 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흔들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cm ²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 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돛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아. 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자. 의류 및 원단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의류 • 기타 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성 섬유(면, 마 등) •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아레탄 등) • 기타 합성섬유류 	
차. 전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 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카. 형광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광등 분리배출 용기에 배출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구분	품목	세부종류	통합 배출 요령
통합 전용 용기에 투입	종이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금속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캔, 알미늄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캔류(부탄가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합성 수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플라스틱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유리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료수병, 기타병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종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 신문지, 상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합성수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티로폼 완충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전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은, 망간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전자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 제거 후 배출
	형광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광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비고 1. 전자제품 중 부피가 작은 것은 통합 전용 용기에 배출

2.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 봉투에 배출
3.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	
나. 영농 폐기물류	·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 농촌폐비닐	-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소형 가전제품	·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라. 전자제 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 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 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 시에 해당 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 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바. 윤활유	·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별표 3-2]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 (제7조의2와 관련)**1.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 보관용기**

가. 요구 규격 : 인력 수거가 가능한 범위 내 크기 제한 없음.

나. 구 조 :

(1) 용기 바닥에는 이동 및 고정이 가능한 바퀴를 부착할 것.

(2) 빗물 투입과 악취발산 방지를 위한 뚜껑을 부착할 것.

※ 단, 시설물의 규모와 배출량을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설치기준

가. 요구 규격

- 크 기 : 인력 수거가 가능한 범위 내 크기 제한 없음.

- 품 목 : 종이류(박스류 별도), 병/고철/캔류, 플라스틱류, 무색PET병, 비닐류 등 최소 5개 품목 이상 수거함을 말한다.

- 기 타 : 종이류, 박스류 수거함 빗물 투입 방지 구조

※ 분리수거함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품목별 그림 또는 모형 등을 용기에 표시하고, 수거 용기 또는 설치장소에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 안내 부착

※ 단, 별도 보관장소를 갖추어 내용물을 수시 수거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경우 세대수와 무관하게, 각 품목별 하나의 수거함을 한 세트로 묶어 설치할 수 있다.

3.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

가. 요구규격

- 개별수거용기: 2리터, 3리터, 5리터

- 공동수거용기: 60리터, 120리터

- 무선주파수인식(RFID)방식 종량제 기기

나. 구 조

(1) 자동 상차가 가능한 구조일 것.

(2) 공동수거용기 바닥에는 이동이 가능한 바퀴를 부착할 것.

(3) 빗물 투입과 악취발산 방지를 위한 뚜껑을 부착할 것.

2. 보관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 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수거함)은 해당 건물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전량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며, 폐기물 수거 차량 출입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시설 규모 및 폐기물의 발생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분리·보관이 쉬운 위치에 적정 규모의 분리·보관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 다.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금속 재질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 재질(FRP 제외)

[별표 4]

쓰레기봉투의 규격별 종류(제10조 관련)

봉투용량(ℓ)	봉투규격(cm) (가로×세로)	종 류
5	26×46.5	일반용봉투(가연성)
10	33×56.5	일반용봉투(가연성, 불연성)
	36×53.5	일반용봉투(재사용종량제)
20	42×69.5	일반용봉투(가연성, 불연성)
	45×65.3	일반용봉투(재사용종량제)
30	48×78.5	가정사업계용봉투
50	56×91.5	일반용봉투(가연성, 불연성)
		공공용봉투
60	50×97	가정사업계용봉투
100	71×113.5	공공용봉투
125	80×120	가정사업계용봉투

- ※ 비고 : 1. 실제 사용할 쓰레기봉투 제작 시에는 봉투 상단에 봉투 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여분의 길이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하되, 소수 첫째 자리에 반올림한다.

$$\text{여분의 길이(cm)} = \frac{\text{가로길이(cm)}}{\pi} + 5\text{cm}$$

[별표 6-1]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1조제4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 배출 시 무게기준 : 〇〇ℓ, 〇〇kg 이하로 배출
(무게기준은 50ℓ에만 표기)

1. 이 봉투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폐종이류, 나무조각류, 상품 포장재 등 가연성(불에 타는)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 봉투에 불연성(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할 경우 또는 무게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50ℓ:13kg 이하)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쓰레기는 지정된 배출시간(20:00~24:00)에 배출하시고,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투입구에 배출하십시오.
4. 침대, 장롱 등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를, 매립 등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운 생활쓰레기는 가정사업계용봉투를 별도로 구입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5.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등 자원순환서비스현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의처: 서구청 자원순환과(☎ 〇〇〇-〇〇〇〇)

서구 시설관리공단(☎ 〇〇〇-〇〇〇〇)

 인증마크 인증번호	표시사항(품질표시) 품 목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종류/용도 : 용 량 : L 치 수 : (두께*너비*높이) 제 조 자 : 업체명(주소 및 연락처) (공 급 자)
---	---

[별표 6-2]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1조제4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ℓ)

-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용 -


※ 배출 시 무게기준 : 〇〇ℓ, 〇〇kg 이하로 배출
(무게기준은 50ℓ에만 표기)

1.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폐각류, 폐전구, 깨진 그릇 등 불연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이 봉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불연성 쓰레기를 버릴 경우 또는 무게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50ℓ:13kg 이하)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3. 쓰레기는 지정된 배출시간(20:00~24:00)에 배출하십시오.
4. 침대, 장롱 등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를, 매립 등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운 생활쓰레기는 가정사업계용봉투를 별도로 구입하여 처리 하여야 합니다.
5.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등 자원순환서비스현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의처: 서구청 자원순환과(☎ 〇〇〇-〇〇〇〇)

서구 시설관리공단(☎ 〇〇〇-〇〇〇〇)

 인증마크 인증번호	표시사항(품질표시)
	품 목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종류/용도 : 용 량 : L 치 수 : (두께*너비*높이) 제 조 자 : 업체명(주소 및 연락처) (공 급 자)

[별표 6-3]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1조제4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ℓ)

- 가정사업계용 -


※ 배출 시 무게기준 : ○○ℓ, ○○kg 이하로 배출
(무게기준은 60ℓ, 125ℓ에만 표기)

1. 이 봉투는 ○○○ 또는 ○○○에 신고하면 수거합니다.
2. 처리대상 쓰레기(가정에서 발생한 사업계 쓰레기 중 가연성쓰레기): 고무, 피혁, 섬유, 폐도배지, 양탄자, 보온재, 폐목재,오니류 등
3. 상기 쓰레기를 이 봉투에 버리지 않는 경우 또는 무게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60ℓ:15kg 이하, 125ℓ:32kg 이하)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등 자원순환서비스현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의처: 서구청 자원순환과(☎ ○○○-○○○○)

서구 시설관리공단(☎ ○○○-○○○○)

 인증마크 인증번호	표시사항(품질표시)
	품 목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종류/용도 : 용 량 : L 치 수 : (두께*너비*높이) 제 조 자 : 업체명(주소 및 연락처) (공 급 자)

[별표 9]

일반용봉투가격의 산정기준(제13조 관련)

$$\text{봉투가격} = \underbrace{\{\text{봉투단가}(\ell\text{당}) \times \text{봉투규격}(\ell\text{당}) + \text{봉투제작비}\}}_{\textcircled{1}} \times \underbrace{\text{수수료자립도}(0.45\sim 1)}_{\textcircled{2}} + \underbrace{\text{판매수수료}}_{\textcircled{4}}$$

[주]

가

나

다

① 봉투단가(ℓ당) = 수집·운반·처리비(원) ÷ 연간처리량(톤) ÷ 부피환산계수(2.500)

가) 수집·운반·처리비(원) = 전년도 1월~10월 비용 + 11월~12월 예상비용

· 기준년도 : 봉투가격 적용년도(T)의 전년도(T-1)

· 수집·운반·처리비 내역 : 수집·운반·처리대행료 또는 직영비, 매립지 반입료, 적환장, 재활용선별
창고등 각종 대행료, 봉투제작비 등

나) 연간 처리량 :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 매립지 반입량 : 사업장폐기물, 대형폐기물은 제외

다) 부피환산 계수 : 무게단위(톤)를 부피단위(ℓ)로 환산하기 위한 산식

※ 근거 : 환경부 폐정67501-696(94. 9. 8)호 쓰레기증량제시행지침
(93쪽의 폐기물학회보고서 93. 1)

② 수수료 자립도(0.45~1)

④ 판매수수료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주민부담률}×판매수수료 비율÷(1- 판매수수료 비율)

⑤ 봉투제작비 = 폐기물봉투 용량별 제작단가

※ 판매수수료, 봉투제작비의 소숫점 단위는 원단위로 최종판매가격의 원단위는 10원단위로 반올림 한다.

가정사업계용 봉투가격의 산정기준(제13조 관련)

$$\text{봉투가격} = \text{처리단가}/\text{kg} \times \text{봉투규격} \times 0.6 + \text{봉투제작비}$$

[주]

① 처리단가

○ 정부고시단가 : 225원/kg (발열량3,000kcal ~ 5,000kcal)

② 봉투규격 : 가로 × (세로+ 묶는 부분) × 두께

③ 통상 무단투기된 가정사업계폐기물 처리 시 처리금액의 60% 수준으로 정함

④ 봉투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가격(제13조 관련)

구분		규격	판매가격		
			계	판매수수료	판매소 납품가격
봉투	일반용봉투 (가연성, 불연성)	5ℓ	160원	12원	148원
		10ℓ	310원	25원	285원
		20ℓ	620원	49원	571원
		50ℓ	1,540원	123원	1,417원
	가정사업계용 봉투	30ℓ	1,870원	150원	1,720원
		60ℓ	3,710원	290원	3,420원
125ℓ		7,660원	610원	7,050원	
스티커	대형폐기물처리용 스티커	1000원권	1,000원	79원	921원
		3000원권	3,000원	237원	2,763원
		5000원권	5,000원	395원	4,605원
		10000원권	10,000원	790원	9,210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3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54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 보급을 안정하게 이바지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
 6. “그린뉴딜”이란 통상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며, 이는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 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그린뉴딜 구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2.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도록 노력하며 해당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시행하는 활성화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주민 의식 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방안
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자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일자리 창출, 현물 보상 등
2. 아이스팩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등
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 및 판매, 보급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등
4. 구와 구 산하 공공기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뉴딜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범지구적 이슈로 다뤄지는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3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55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자들”을 “노동자들”로, “근로자의”를 “노동자의”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 “사용자””를 ““사용자””로, “근로자, 사용자”를 “사용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소속 노동자”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근로자와”를 “노동자와”로, “소속 근로자”를 “소속 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자”를 “구 소속 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유사근로자”를 “유사노동자”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3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5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공인일 것
-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통계자료 조사 등)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도시형소공인 및 관련 기관과 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지원
5. 퇴직근로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제6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이하 “집적지구”라 한다)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구청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 및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보수
5. 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을 지원센터에 두어야 한다.

제9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한도,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공동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
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
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관로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3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5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중 “등에 관하여”를 “등은”으로, “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를 “에서 규정한 것 외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을 말한다”로 한다.

제4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를 “(법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계상”을 “계상(計上)”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자는”을 “구청장이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하계하는”을 “하계 하는”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만료전이라도”를 “임기만료 전이라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를 “소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7일전”을 “7일 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연장자순”을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을 “도로명주소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수행한다”로 한다.

제22조 중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를 “관계 전문가 등에게”로, “수당과 기타”를 “수당과, 그 밖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3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58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서구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세미나·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

다.

- 제3조(운영) 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진하게 한다.
- ④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주제별 소관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진행과 관리) ① 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운영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사회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 발언 내용을 제한·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는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견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론회 등 개최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위원회 또는 의원)	성 명 :	직 위 :
	소 속 :	연락처 :

행 사 명			
목 적			
일시/장소		참석인원	
기대효과			
<input type="checkbox"/> 주요내용 <input type="radio"/>			
붙임 : 토론회 등 개최 계획서 1부 ※ 계획서 작성시 포함 사항 1) 발제자 및 토론자 명단 2) 토론회 개요 3)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일시 / 장소	
발제자와 토론자 명단	
토 론 진행사항	
그 밖의 사항	
비 고	개최사진 등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3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59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미래기획단,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소통협력담당관”을 “감사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미래기획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미래도시국”을 “도시관리국”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상임위원장 선거) ①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
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3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규칙 제1019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구청장이 장학생을”을 “장학생 선발 및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에 따르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일”을 “10일”로,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본인에게 송금하거나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를 “장학생 본인 또는”으로, “현금으로 지급한다”를 “지급하고,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 총점 배분

계	통장 경력	학업성적 또는 특기
100	50	50

□ 통장 경력

근속연수	6년 이상	5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평 점	50	45	40	35	30	25

□ 학업 성적

고등학교 성적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검정고시 성적	100	90	85	80	75
대학교성적 (등급)	4.5 (A+)	4.0 (A0)	3.5 (B+)	3.0 (B0)	2.5 (C+)
기능, 체육 특 기 자	국가 대표급, 장관 표창 이상 수상자	시 대표급, 시장 또는 시교육감 표창 수상자	구 대표급, 구청장 또는 교육지원청장 표창 수상자		
평 점	50	40	30	20	10

- 주) 1. 통장 경력 산정 기준일 : 해당연도 『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洞통보일 현재
 2. 학생성적 기준 : 표의 점수 및 등급 이상을 범위로 하며 만점 기준은 4.5로 환산
 3. 직전 학기 기준 : 정기학기 기준. 계절학기 등 비정기 학기는 제외.

통장 자녀 장 학생 추천서

1. 보호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2. 장학생 인적사항

- 성 명 :
- 학 교 명 :
- 학 년 : 학년 반(학과)
- 생년월일 :

3. 확인사항

통장 근속연수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학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기타장학금 수혜여부 (금액기재)	비고

4. 동장의견 :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 동장 (직인)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1. 장학생 인적사항

- 성 명 : (남, 여)
- 주 소 :
- 학 교 명 :
- 학 년 : 학년 반(학과)
- 생년월일 :

2. 장학금 신청계좌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비 고

3. 제출서류 :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년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장학생) : 성명 (인)
 보호자(통 장) : 성명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3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규칙 제1020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3. 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4.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②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과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회원증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거나 별

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절차를 거친 후 제1항의 자격을 증빙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학생증, 청소년증,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2.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는 미성년자) 1부.
3. 재직증명서(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④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3항에서 요구하는 행정정보의 경우 회원가입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44호

2021년 녹색제품 구매계획 공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3.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021년 인천광역시 서구 계획								
(금액단위 : 천원)								
총합계	총구매(일반+녹색구매)(A)		녹색구매(B)		비율(%) (B/A)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7,443	9,284,931	4,529	4,183,382	60.8	45.1		
녹색구매분류			총구매(A)		녹색구매(B)		비율(%) (B/A)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사무/교육/영상/가전	사무기기	복사기	0	4,000	0	4,000	0	100
		팩시밀리	0	0	0	0	0	0
	가전제품	세탁기	0	0	0	0	0	0
		식기세척기	0	0	0	0	0	0
		냉장고	0	0	0	0	0	0
		공기청정기	0	0	0	0	0	0
		텔레비전 및 비디오프로젝터	0	88,000	0	50,000	0	56.8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	0	0	0	0	0	0
		에어컨디셔너	0	377,000	0	200,000	0	53.1
가구	책상(탁자)	2	80,520	2	40,520	100	50.3	

		의자	6	50,870	2	30,300	33.3	59.6
		보관용 가구	3	561	3	561	100	100
		침대 및 침대매트리스	0	0	0	0	0	0
		주방가구	0	7,300	0	7,000	0	95.9
		기타 가구 및 부속품	4	4,928	4	4,528	100	91.9
	OA칸막이 (파티션)	OA칸막이	0	32,000	0	25,000	0	78.1
	지류	인쇄용지	702	19,639	442	13,277	63	67.6
		사무용지	720	16,078	535	11,679	74.3	72.6
		기타지류	60	2,760	60	2,760	100	100
	일반 사무용품	필기구 및 필기구 소모품	72	6,160	62	2,660	86.1	43.2
기타 사무용품		712	23,150	667	13,950	93.7	60.3	
전자/ 정보/ 통신	개인용 컴퓨터	개인용컴퓨터	0	400,000	0	250,000	0	62.5
	노트북	노트북 컴퓨터	0	10,000	0	5,000	0	50
	프린터	프린터	0	0	0	0	0	0
	모니터	컴퓨터용 모니터	0	50,000	0	25,000	0	50
		전자판서 모니터	0	0	0	0	0	0
	프로젝터	디지털 프로젝터	0	0	0	0	0	0
	카트리지	카트리지(토너/잉크)	8	1,760	0	0	0	0
	기타 소모품	재보충 장치 및 잉크	0	0	0	0	0	0
설비/ 고위생/ 위생/가	의류	작업용 의복	0	48,000	0	38,000	0	79.2
		군용 및 경찰용 의복	0	0	0	0	0	0
		기타 의복	0	0	0	0	0	0
	개인장구	개인장구	0	85,000	0	55,000	0	64.7
		침구	0	0	0	0	0	0
	위생용품	비누	0	0	0	0	0	0
		세제 및 세정제	5	90,015	3	70,007	60	77.8

		방향·소취제	0	0	0	0	0	0
		화장지 및 종이, 에어 타월	145	7,060	145	7,060	100	100
		식품용기	0	20	0	20	0	100
		봉투	2,004	2,180,310	2,004	1,000,260	100	45.9
	포장재	포장용기	0	0	0	0	0	0
		기타 포장재료	0	0	0	0	0	0
	여가용품	여가용품	0	0	0	0	0	0
화학/소방/안전	화공약품	수처리제	0	0	0	0	0	0
		산업용 탈취제	0	0	0	0	0	0
	소방방제	소화용구	0	0	0	0	0	0
	실내연료유	난방연료	0	0	0	0	0	0
차량/운반	건설기계	건설중장비	0	0	0	0	0	0
	차량용품	차량용 타이어	0	0	0	0	0	0
		차량용 엔진오일	0	0	0	0	0	0
		유압작동유	0	0	0	0	0	0
		자동차용 부동액	0	0	0	0	0	0
		비석면 운송부품	0	0	0	0	0	0
		기타 차량용품	0	0	0	0	0	0
	특장차	특장차	0	0	0	0	0	0
전기/시험/계측	발전장치	축전지	0	3,500	0	0	0	0
	램프 및 안정기	형광램프	0	300,000	0	150,000	0	50
		등기구	0	1,000,000	0	400,000	0	40
		램프용 안정기	0	0	0	0	0	0
	가로등	가로등	0	0	0	0	0	0
	전기자재	전선케이블	0	0	0	0	0	0
	기타 전기자재	기타전기자재	0	0	0	0	0	0
기계/설비	냉온수기 및 정수용품	정수용품	0	0	0	0	0	

	보일러	가스보일러	0	0	0	0	0	0
	수도자재	절수형 수도꼭지	0	0	0	0	0	0
		수도꼭지 절수부속	0	0	0	0	0	0
		샤워용품	0	0	0	0	0	0
		절수형 양변기	0	0	0	0	0	0
		양변기용 부속	0	0	0	0	0	0
		수도계량기	0	0	0	0	0	0
		수도꼭지 배관용 정수필터	0	0	0	0	0	0
		수도계량기 보호통	0	800	0	800	0	100
		수도용 급수관	0	0	0	0	0	0
		소변기	0	0	0	0	0	0
	일반기계 설비	산업용 세척기	0	0	0	0	0	0
		기타 기기	0	0	0	0	0	0
	토목/ 건축	아스콘	아스콘	2,500	750,000	500	130,000	20
투수콘		투수 콘크리트	0	0	0	0	0	0
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0	0	0	0	0	0
일반 피복관		배수관	0	400,000	0	150,000	0	37.5
배수조 및 오수받이		배수조	0	0	0	0	0	0
		오수받이	0	0	0	0	0	0
블록		보도블록	500	5,000	100	1,000	20	20
		호안블록	0	0	0	0	0	0
		기타 블록	0	800,000	0	300,000	0	37.5
골재		골재	0	0	0	0	0	0
타일		타일	0	0	0	0	0	0
벽돌		벽돌	0	40,000	0	0	0	0
경계석		경계석	0	0	0	0	0	0
가로수 보호판	가로수 지주대 보호판 및	0	20,000	0	0	0	0	

	창호	창호	0	450,000	0	100,000	0	22.2
	페인트	페인트	0	1,000,000	0	700,000	0	70
	벽지	벽지	0	500	0	0	0	0
	보온단열재 및 흡음재	보온단열재 및 흡음재	0	50,000	0	50,000	0	100
	건설용 방수재	건설용 방수재	0	180,000	0	0	0	0
	바닥재	바닥장식재	0	70,000	0	70,000	0	100
		고무바닥재	0	150,000	0	50,000	0	33.3
	조립식 바닥 난방시스템	조립식 바닥 난방시스템	0	0	0	0	0	0
	마감재	벽 및 천장 마감재	0	50,000	0	5,000	0	10
	접착제	접착제	0	0	0	0	0	0
	장식용 합성 수지 시트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	0	0	0	0	0	0
	동합금	동합금 제품	0	0	0	0	0	0
	기타 토목건축	기타 토목건축자재	0	180,000	0	120,000	0	66.7
도로시설/ 용품	교통표지판 (도로안내표)	표지판	0	70,000	0	0	0	0
	도로분리대 및 난간	도로분리대 및 난간	0	0	0	0	0	0
	흡음판	방음벽 및 방음판	0	0	0	0	0	0
	도로용품	기타 도로용품	0	130,000	0	100,000	0	76.9
원부자재/ 기타	육묘상자	육묘상자	0	0	0	0	0	0
	인공어초 및 부자	인공어초 및 부자	0	0	0	0	0	0
	흙막이판	흙막이판	0	0	0	0	0	0
	사료	사료	0	0	0	0	0	0
	토양 개량제	토양개량제	0	50,000	0	0	0	0
	기타	기타	0	0	0	0	0	0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4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정정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8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 3.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 원당동 검단신도시 AA8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주)우미산업개발 (대표자 : 고희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09 (우산동)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8블록
 - 나. 대지면적 : 18,169㎡
 - 다. 사업규모 : 정정 전 연면적 55,008.7113㎡ (지하 2층, 지상 25층)
정정 후 연면적 54,931.1913㎡ (지하 2층, 지상 25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4개동 37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마. 사 업 비 : 137,357,623천원
4. 사업기간 : 2021. 2. 1. ~ 2023. 10. 01.

5. 변경사항(세부내역 붙임 참조)

- 가. 용적률, 건폐율 및 건축면적 변경 등
- 나. 주민공동시설 레이아웃 및 면적 변경 등
- 다. 지하주차장 및 설비공간 변경 등
- 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적용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붙임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세부내역 1부. 끝.

주택건설사업계획 [1차변경]승인 변경내용

- 사 업 명 : 인천검단 AA8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대지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A8블록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승 인 일 : 2020.10.12. 제2020-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호
- 변경내역 :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			비고	
대지면적		18,169.0000m ²			변경없음			-				
연 면 적	지상	35,403.0042m ²			35,327.1741m ²			-75.8301m ² (감)				
	지하	19,579.3733m ²			19,604.0172m ²			+24.6439m ² (증)				
	합계	54,982.3775m ²			54,931.1913m ²			-51.1862m ² (감)				
용적율산정용 연 면 적		35,403.0042m ²			35,327.1741m ²			-75.8301m ² (감)				
용 적 율		194.85%			194.44%			-0.41% (감)				
건축면적		2,685.8054m ²			2,643.4984m ²			-42.3070m ² (감)				
건 폐 율		14.78%			14.55%			-0.23% (감)				
형별 면적	구분	전용	공용	공급	전용	공용	공급	전용	공용	공급		
	59A	59.9380	23.6814	83.6194	변경없음			-				
	59B	59.8198	23.6308	83.4506								
	84	84.8773	24.4267	116.5221								
세대수		370세대			변경없음			-				
층수		지하2층~지상25층			변경없음			-				
주차대수		484대			변경없음			-				
■용도별 면적												
개 요	아파트		34,641.6770m ²			34,641.6770m ²			-			
	관리 사무 소	지상	32.4962m ²			32.4962m ²			-			
		지하	225.4382m ²			240.3220m ²			+14.8838m ² (증)			
		합계	257.9344m ²			272.8182m ²			+14.8838m ² (증)			
	경로당		81.4029m ²			81.4029m ²			-			
	어린이집		177.7345m ²			177.7345m ²			-			
	작은도서관		108.7167m ²			109.6240m ²			+0.9073m ² (증)			
	경비실		19.6759m ²			20.2858m ²			+0.6099m ² (증)			
	지하주 차장	B2F	8,645.1035m ²			8,628.6185m ²			-16.4850m ² (감)			
		B1F	8,753.5443m ²			8,764.7197m ²			+11.1754m ² (증)			
		합계	17,398.6478m ²			17,393.3382m ²			-5.3096m ² (감)			
	기계,전기실		668.1204m ²			626.3461m ²			-41.7743m ² (증)			
	주민공동시설		573.4992m ²			584.6583m ²			+11.1591m ² (증)			
	키즈스테인션		64.0368m ²			64.0368m ²			-			
	공용창고		604.9510m ²			649.7286m ²			+44.7776m ² (증)			
	외부공용		90.4621m ²			14.0221m ²			-76.4400m ² (감)			
	근린생활시설		295.5188m ²			295.5188m ²			-			
	합 계		54,982.3775m ²			54,931.1913m ²			-51.1862m ² (감)			

구 분	설계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경전	변경후			
1	용적률 변경	외부공용(쓰레기보관시설) 25.48㎡ /12.74㎡ 경비실 면적 19.6759㎡ 용적률 산정 연면적 : 35,403.0042㎡ 194.85%	외부공용(쓰레기보관시설) 25.48㎡x2+12.74㎡x2 ∴ 76.44㎡ 감소 경비실 면적 20.2858㎡ ∴ 0.6099㎡ 증가 -76.44+0.6099=75.8301㎡ 감소 용적률 산정 연면적 : 35,327.1741㎡ 194.44% ∴ 0.41% 감소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①항 3의 바닥면적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경비실 면적 산정 오류 정정	
2	건폐율 및 건축면적 변경	2,685.8054㎡ 14.78%	2,643.4984㎡ 14.55% ∴ 0.23% 감소	1. 설비 DA 추가 계획 2.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면적 삭제	
3	공용창고 사이즈 변경	604.9510㎡	649.7286㎡ ∴ 44.7776㎡ 증가	804동 공용창고 면적누락 및 804,802동 벽체 라인 조정	
4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평면 레이아웃 변경	225.4382㎡	240.3220㎡ ∴ 14.8838㎡ 증가	건축주 요청에 의한 사항 1~3 1. 방재실, 관리사무소 형태 변경 2. 탕비실 위치 이동 2. 숙직실 삭제	
5	주민공동시설 공용부 레이아웃 변경	573.4992㎡	584.6583㎡ ∴ 11.1591㎡ 증가	건축주 요청에 의한 사항 1~3 1. ELEV.위치 이동 2. 주차장에서 보행자 진입통로 폭 추가확보 3. FSD에서 SSD로 변경(별도의 방화셔터 설치)	
6	작은도서관 면적 변경	108.7167㎡	109.6240㎡ ∴ 0.9073㎡ 증가	주민공동시설 레이아웃 변경에 의한 증가	
7	설비공간 면적 변경	기계실 234.4771㎡ 전기실 212.6636㎡ 발전기실 70.3560㎡ 오배수펌프실 18.6088㎡ 빗물저류조 98.5283 ① 설비공간 634.6338㎡	기계실 233.0757㎡ 전기실 195.3856㎡ 발전기실 68.2650㎡ 오배수펌프실 22.7653㎡ 빗물저류조 17.5200㎡ ① 설비공간 537.0116㎡	기계실 : 벽체두께에 의한 면적 증가 전기실, 발전기실 : 세대와 DA의 간섭 정리에 의한 면적 변경 오배수펌프실 : 벽체 위치 이동	
	동통신실 면적 정리	② 33.4866㎡	② 89.3345㎡	주차장면적으로 산입되어 있던 면적을 동통신실 면적으로 정정	
		①+② 설비공간 668.1204㎡	①+② 설비공간 626.3461㎡ ∴ 41.7743㎡ 감소		
8	지하주차장 면적 감소	지하2층 : 8,645.1035㎡ 지하1층 : 8,753.5443㎡ 합계 : 17,398.6478㎡	지하2층 : 8,628.6185㎡ 지하1층 : 8,764.7197㎡ 합계 : 17,393.3382㎡ ∴ 5.3096㎡ 감소	.주차장면적으로 산입되어 있던 면적을 동통신실 면적으로 정정 .팬룸 및 동통신실 면적산정 오류 정정 .폐기물 보관시설 추가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6-5(신축건축물) 인증항목 : 3.6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분리수거 용기 전용 설치공간 150세대당 10㎡ 설치 ∴ 30㎡ 이상 설치 .지하2층 부대시설 코어 변경에 따른 면적 수정 .오배수펌프실 벽체 위치 이동에 따른 면적 변경	

구 분		설계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경전	변경후		
9	단열재 위치 변경	화장실, 현관 : 슬라브 상단 THK60 하단 THK60	화장실, 현관 : 슬라브 하단 THK120	건축주 요청에 의한 사항 : 시공성 확보	
10	안방창호 스펙변경	G02 16mm 복층유리	G02 22mm 복층유리	건축주 요청에 의한 사항 : 기준변경(시험성적서 참조)	
11	키즈스테이션 화장실 문 변경	SSD 10.5x22	WD 10.5x22	건축주 요청에 의한 사항 : 시공성 확보	
12	최상층 세대 발코니 마감변경	THK9.5 석고보드	THK9.5+12.5석고보드로	건축주 요청에 의한 사항 : 기준변경	
13	단위세대 발코니 수전 및 FD 변경	도면참조	도면참조	건축주 요청에 의한 사항 : 기준변경	
14	착공기간 변경	착공 : 2020-11-30 사용검사 : 2023-07-30	착공 : 2021-03-01 사용검사 : 2023-10-3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 반영에 따른 공사일정 변경	
토 목 - 구 조					
1	토목 흙막이 공법 변경	ANCHOR 공법	R.S.R. 이열 자립식 흙막이 공법 (레이커공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 사항	
2	구조영역 변경	일부 PC구간	RC구간으로 변경	실질적인 공사시 PC구간 영역이 안나옴 (현장의견)	
기 타					
1	건강친화형 주택	미적용(의무대상 아님)	적용	건축주 요청에 의한 사항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46호

지적기준점성과 복구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기준점 성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3.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개 요

1. 지적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이하 좌표와 같음)
2. 좌표

연번	지적기준점		세계측지좌표		중부좌표		계량좌표		비고
	명칭	번호	X(m)	Y(m)	X(m)	Y(m)	X(m)	Y(m)	
1	지적도근점	8027					5481.170	-7496.000	

3. 설치일,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
 - 설치일 : 2014. 06. 29.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536-2
 - 표지의 재질 : 철재
4. 측량성과 보관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4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3.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아라로 117-1 외 1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3.15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1-3-15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97-2	인천광역시 서구 아라로 117-1 (시천동)	20090706	경인아라뱃길 조성으로 향후 위치예측성을 고려하여 제명	
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1-18, 391-21	인천광역시 서구 북창로 28-23 (원창동)	20090922	인천의 대표적 항구인 북항을 지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73	인천광역시 서구 장서로 75 (청라동)	20101111	청라대로 서쪽에 위치	
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4-7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환내로 131 (청라동)	20140804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및 콘시내를 이르는 말	
5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소담2로 42 (금곡동)	20191223	소담로에서 두 번째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27-1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139번길 15-6 (오류동)	20090922	단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강남
7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18-7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85번길 40-1 (오류동)	20090922	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6-18, 96-19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환내로72번길 7-25 (청라동)	20140804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및 청라환내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6-22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43번길 33 (가좌동)	20170703	장고개로 시작지점에서 약2,430m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5-20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181번길 3-15 (청라동)	20201012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5-23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181번길 3-7 (청라동)	20201012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5-23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181번길 3-9 (청라동)	20201012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조서

고시일 : 2021-3-15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1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30번길 14 (가좌동)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12번길 15 (가좌동)	소유자 신청	20090922	가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48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97호(2020.6.15.)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 시설 【하수도, 사업명: 검단신도시 우수중계펌프장 및 관로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담당관, ☎032-560-476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1. 3.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마전동 일원

2.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하수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하수도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52-2번지 일원	-	3,089	3,089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97호 (2020.6.15.)	

○ 압송관로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 (k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신설	가	하수도	불로동 52-2	마전동 1096	광로 3-27호	4.89	4,374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97호 (2020.6.15.)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	하수도 (중계펌프장)	○ 신설 - 면적: 3,089㎡	○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2·3단계 구 역 오수와 인근 지역(마전, 불로 등)의 오 수를 검단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 하여 오수중계펌프장과 압송관로를 신설함.
가	하수도 (압송관로)	○ 신설 - 연장: 4,890m - 면적: 4,374㎡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 명칭 : 검단신도시 오수중계펌프장 및 관로공사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구분		연장 (m)	면적 (㎡)	비고
신설	중계 펌프장	-	3,089	
신설	압송 관로	4,890	4,374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도시공사 사장 이승우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3.06.30.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검단신도시 오수중계펌프장 및 관로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연번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1	175	불로동	52-2	답	1,779.0	832.00	김*영	인천 계양구 서운동 **				
2	176	불로동	52-1	답	3,037.0	2,144.00	황*미	전라남도 영광군 흥농읍 상하리 ***				
3	177	불로동	52	답	975.0	153.00	최*호	인천 계양구 용종동 ***~**				
4	4	불로동	51-4	답	1,967.0	18.00	이*레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				
5	5	불로동	51-5	답	640.0	6.00	박*배	서울 은평구 갈현로36길 ***~**				
6	6	불로동	51-3	답	1,328.0	12.00	박*배	서울 은평구 갈현로36길 ***~**				
7	7	불로동	51-2	답	2,916.0	27.00	국토교통부					
8	8	불로동	51-1	답	1,014.0	9.00	김*술	인천 계양구 병방동 ***~**				
9	9	불로동	51	답	4,003.0	36.00	조*인	인천 부평구 부개동 ****~**				
10	10	불로동	50-3	답	4,007.0	37.00	윤*	인천 계양구 장제로920번길 **				
11	11	불로동	50-2	답	3,960.0	36.00	이*천	인천 남동구 만수동 **				
12	12	불로동	50-1	답	5,567.0	50.00	김*영	***				
13	13	불로동	50	과	3,307.0	29.00	김*환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				
14	14	불로동	50-4	과	3,307.0	30.00	김*갑	김포시 감정동 산*				
15	15	불로동	48-6	과	2,819.0	27.00	박*수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첫섬로 ***~**				
16	16	불로동	48-3	과	2,645.0	25.00	박*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				
17	17	불로동	48-2	대	658.0	17.00	이*호	인천 서구 마전동 ***~**				
18	18	불로동	48-7	전	1,495.0	4.00	이*호	인천 서구 마전동 ***~**				
19	20	불로동	48-8	답	2,602.0	32.00	황*진	인천 강화군 길상면 마니산로***번길 **				
							허*숙	인천 강화군 길상면 마니산로***번길 **				
20	21	불로동	48-5	전	3,915.0	44.00	김*중	김포군 검단면 불노리 **				
21	22	불로동	415-4	도	132.0	1.00	김*식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				
22	23	불로동	415-5	답	192.0	2.00	기획재정부					
23	24	불로동	415-6	도	579.0	7.00	인천광역시서구					

연번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24	25	불로동	415-22	도	192.0	4.00	이*중	검단면 불로리 **				
25	26	불로동	570-12	구	1,106.0	4.00	농림축산식품부					
26	27	불로동	59	답	4,110.0	41.00	이*자	인천 서구 가현로*				
27	28	불로동	59-1	답	1,533.0	18.00	김*호	인천 연수구 연수1동 ***				
							김*호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 **블럭*-*롯데				
							김*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				
							김*선	인천광역시남동구 간석동 ***-*				
							김*호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				
							김*호	경기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				
							김*호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				
							장*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				
							류*남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				
김*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번길 **											
28	29	불로동	59-2	답	2,346.0	32.00	김*호	인천 연수구 연수1동 ***				
							김*선	인천광역시남동구 간석동 ***-*				
							김*호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				
							김*호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				
							김*호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				
							김*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				
							김*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번길 **				
							장*자	인천 계양구 계산동 ***-*				
김*호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블럭*-*롯데											
29	30	불로동	570-2	구	419.0	5.00	농림축산식품부					
30	31	불로동	61	답	3,616.0	37.00	김*호	인천 연수구 연수1동 ***				
							김*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김*호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				
							김*호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				
							김*호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				
							김*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				
							김*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번길 **				
							장*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				
김*호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블럭*-*롯데											

연번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면또 는명칭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31	32	불로동	61-1	답	2,158.0	21.00	김*국	인천 계양구 계산동 **				
32	33	불로동	61-2	답	1,538.0	15.00	문*중	***				
33	34	불로동	61-7	답	1,141.0	11.00	문*중	인천 서구 불로동 ***-				
34	35	불로동	61-8	전	1,694.0	25.00	문*식	인천 서구 검단로 ***(불로동)				
35	36	불로동	61-5	답	1,116.0	25.00	문*중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 (불로동)				
36	37	불로동	409	전	1,311.0	12.00	김*숙	서울 금천구 독산동 ****-**				
37	38	불로동	409-1	전	2,029.0	19.00	김*숙	서울 금천구 독산동 ****-**				
38	39	불로동	409-4	도	1,342.0	11.00	인천광역시					
39	40	불로동	570-3	구	563.0	5.00	농림축산식품부					
40	41	불로동	409-8	도	1,570.0	13.00	인천광역시					
41	42	불로동	409-5	도	77.0	1.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만수동 1090번지)				
42	43	불로동	409-2	전	1,656.0	18.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43	44	불로동	570-4	도	802.0	8.00	농림축산식품부					
44	45	불로동	409-3	전	2,127.0	20.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45	46	불로동	410-1	과	5,417.0	53.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46	47	불로동	570-5	구	657.0	6.00	농림축산식품부					
47	48	불로동	410-2	전	1,250.0	10.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48	49	불로동	410-3	전	2,376.0	20.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49	50	불로동	410-4	전	5,140.0	46.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50	51	불로동	410-5	답	2,565.0	27.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51	52	불로동	570-10	구	362.0	5.00	농림축산식품부					
52	53	불로동	410-6	답	2,088.0	32.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53	54	불로동	423	답	491.0	9.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54	55	불로동	423-1	답	1,880.0	37.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55	56	불로동	423-2	답	376.0	8.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56	57	불로동	423-3	답	1,566.0	34.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57	58	불로동	570-25	도	1,280.0	5.00	농림축산식품부					
58	59	불로동	423-9	전	1,068.0	30.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59	60	불로동	423-5	답	2,532.0	35.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60	61	불로동	423-6	답	866.0	11.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61	62	불로동	424	답	794.0	10.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62	63	불로동	424-1	답	482.0	6.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연번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또 는 명칭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63	64	불로동	424-2	전	3,183.0	29.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64	65	불로동	570-7	구	866.0	3.00	농림축산식품부					
65	66	불로동	424-3	답	1,855.0	18.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66	67	불로동	424-4	답	1,386.0	11.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67	68	불로동	425	전	3,276.0	7.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68	69	불로동	568	구	10,662.0	69.00	농림축산식품부					
69	70	불로동	465-3	답	2,942.0	56.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70	71	불로동	568-1	도	7,910.0	16.00	농림축산식품부					
71	72	불로동	569-3	구	264.0	4.00	농림축산식품부					
72	73	불로동	465-2	답	2,893.0	88.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73	74	불로동	569-4	구	584.0	7.00	농림축산식품부					
74	75	불로동	464-4	전	2,488.0	45.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75	76	불로동	575-1	구	1,102.0	16.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76	77	불로동	577-4	대	1,556.0	43.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77	78	불로동	577-5	임	1,339.0	7.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78	79	불로동	577-10	과	194.0	5.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79	80	불로동	577-8	과	384.0	12.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80	81	불로동	566-1	전	276.0	2.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81	82	불로동	581-1	도	2,201.0	1.00	인천광역시서구					
82	83	불로동	산103	임	1,388.0	16.00	인천광역시서구					
83	84	불로동	산109-1	도	992.0	5.00	국토교통부					
84	85	불로동	583-1	대	182.0	3.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85	86	불로동	582-2	대	510.0	2.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86	87	불로동	583	대	612.0	15.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87	88	불로동	611-1	답	608.0	7.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88	89	불로동	608-2	전	536.0	28.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89	90	불로동	608-3	구	301.0	11.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90	91	불로동	608-4	전	460.0	19.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91	92	불로동	608-6	답	1,749.0	13.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92	93	불로동	611-3	답	2,231.0	21.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93	94	불로동	608-8	답	2,009.0	33.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94	95	불로동	608-20	답	231.0	8.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95	96	불로동	608-21	대	264.0	1.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96	97	불로동	608-16	대	1,347.0	5.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연번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또 는 명칭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97	98	불로동	608-14	답	390.0	20.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98	99	불로동	604-14	잡	243.0	3.00	국방부					
99	100	불로동	746-1	구	1,747.0	19.00	국토교통부					
100	101	불로동	622-42	잡	757.0	34.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01	102	불로동	622-15	잡	1,696.0	50.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02	103	불로동	622-5	잡	2,835.0	68.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03	104	불로동	622-14	잡	2,268.0	49.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04	105	불로동	622-28	잡	2,971.0	31.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05	106	불로동	622-27	잡	177.0	10.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06	108	불로동	622-19	잡	7.0	3.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07	109	불로동	622-30	잡	1,279.0	49.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08	110	불로동	622-29	잡	203.0	7.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09	111	불로동	623-12	구	259.0	14.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10	112	불로동	636-4	대	165.0	3.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11	113	불로동	622-34	잡	2,679.0	83.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12	114	불로동	622-33	잡	2,271.0	43.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13	115	불로동	667-22	답	478.0	4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14	116	불로동	667-4	답	1,710.0	2.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15	117	불로동	667-29	대	128.0	1.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16	118	불로동	667-12	대	6.0	3.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17	119	불로동	667-9	대	611.0	43.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18	120	불로동	667-26	대	292.0	4.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19	121	불로동	667-25	도	1,788.0	6.0	인천광역시서구					
120	122	불로동	681-1	전	289.0	26.0	인천광역시서구					
121	123	불로동	682-11	도	713.0	14.0	인천광역시서구					
122	124	불로동	682-8	도	958.0	2.0	인천광역시서구					
123	125	불로동	667-2	전	328.0	16.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24	126	불로동	750-10	천	151.0	3.0	국토교통부					
125	127	불로동	748-4	도	160.0	5.0	국토교통부					
126	128	불로동	720-11	구	786.0	12.0	농림축산식품부					
127	130	불로동	516-8	답	446.0	19.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28	131	불로동	516-9	답	217.0	15.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29	132	불로동	516-12	답	256.0	21.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30	133	불로동	720-22	구	252.0	33.0	농림축산식품부					

연번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131	134	불로동	516-17	답	127.0	6.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32	135	불로동	516-16	답	15.0	2.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33	136	불로동	516-28	답	131.0	16.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34	138	불로동	516-18	답	463.0	6.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35	139	불로동	516-19	답	628.0	23.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36	140	불로동	516-23	답	628.0	28.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37	141	불로동	517-21	답	698.0	28.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38	142	불로동	517-24	답	621.0	28.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39	143	불로동	517-26	답	117.0	4.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40	144	불로동	720-16	구	258.0	1.0	농림축산식품부					
141	145	불로동	720-3	구	34.0	4.0	농림축산식품부					
142	146	불로동	517-10	답	200.0	13.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43	147	불로동	517-11	전	214.0	12.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44	148	불로동	517-25	전	362.0	11.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45	149	불로동	517-2	전	1,665.0	1.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46	150	불로동	517-27	답	1.0	1.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47	151	불로동	517-4	답	309.0	1.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48	152	불로동	517-34	답	7.0	2.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49	153	불로동	517-28	답	97.0	1.0	인천광역시					
150	154	불로동	517-32	답	1,544.0	25.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51	155	불로동	517-18	답	439.0	9.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52	156	불로동	517-5	답	335.0	9.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53	157	불로동	517-29	답	137.0	1.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54	158	불로동	517-6	답	233.0	1.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55	159	불로동	720-8	구	1,467.0	13.0	농림축산식품부					
156	160	불로동	750-4	천	1,434.0	7.0	국토교통부					
157	161	불로동	724-5	답	140.0	9.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58	162	불로동	724-4	답	91.0	1.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59	163	불로동	724-6	전	1,435.0	4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60	164	불로동	724-14	답	2,369.0	53.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61	165	불로동	724-28	답	882.0	37.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62	166	불로동	724-23	대	358.0	11.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63	167	불로동	725-10	대	395.0	19.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64	168	불로동	725-7	답	145.0	1.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연번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면또 는명칭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165	169	불로동	725-17	대	207.0	9.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66	170	불로동	725-13	답	642.0	2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67	171	불로동	725-15	대	895.0	13.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68	172	마전동	1096	도	36,512.9	754.0	인천광역시					
169	173	당하동	1116	도	22,672.7	194.0	인천광역시					
170	174	마전동	628-3	도	11,166.0	365.0	인천광역시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해당없음)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4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4블록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 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3.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4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주)바우하우스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4블록
 - 나. 대지면적 : 55,086㎡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150,226.9313㎡ (지하2층 ~ 지상25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10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마. 세 대 수 : 887세대
4. 사업기간 : 2019. 5. 1. ~ 2022. 5. 30.
5. 변경사항
 - 사업주체 [(주)바우하우스] 대표자 변경(공○○ → 오○○)

- 시공자 [(주)동양건설산업] 대표자 변경(우○○ → 박○○)
- 연면적 +80.136m² 증가 및 기타변경(붙임 참조)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붙임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내역

■ 대지위치 :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4블록

■ 건축

NO	구분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 아파트					
0	관계자 변경	1.사업주체 2.시공자	1.(주)바우하우스 대표자 공병도 2.(주)동양건설산업 대표자 우승현	1.(주)바우하우스 대표자 오정화 2.(주)동양건설산업 대표자 박광태	대표자 변경
1	배치도	① 단지출입 중앙광장 바닥레벨 변경 ② P2 진입램프폐쇄 ③ 근생2 위치변경	①중앙광장 레벨:38.5 ② P2 진입램프 있음 ③ 변경 전	①중앙광장 레벨:39 ② P2 진입램프 폐쇄 ③ 변경 후	①도로 경사로 조정 (주변 주차장 진출입 구배 완화) ② 입주예정자 요구에 따른 주차구획 등 변경 ③ 대지안의공지 확보
2 (1)	세대공통	욕실바닥 단열재 위치변경	슬라브 상부 비드법1종3호,T30	슬라브 하부 압출법1호,T30	단열성능 향상 및 난방 시 수증기압 발생에 따른 방수하자 방지
2 (2)	세대공통	바닥 완충재 변경	D1-DJ-III (㈜동일수지) 경량:1급, 중량:3급	HENP-DS30(㈜EPS코리아) 경량:1급, 중량:3급	열관류율 향상
3 (1)	세대공통	아파트 세대 현관문	열관류율 1.392 [W/m²K] 기밀성능1등급0.58m³/hm²	열관류율 1.196 [W/m²K] 기밀성능1등급0.85m³/hm²	단열성능이 향상된 제품사용 다만, 기밀성능은 조금 떨어지나 같은 1등급으로 문제없음 (기밀성능 1등급 : 1.0이하)
3 (2)	세대공통	아파트 세대 발코니문	열관류율 1.270 [W/m²K] 기밀성능2등급	열관류율 1.123 [W/m²K] 기밀성능1등급	단열성능과 기밀성능이 향상된 제품 사용
4 (1)	세대공통	침실3과 주방 사이 벽체 길이 축소	문옆 선반가구 없음	문옆 선반가구 있음	모델하우스에 맞게 변경 (주방가구 설치공간 확보)
4 (2)	세대공통	부부욕실 방수 취약부위 보완을 위해 벽돌쌓기 변경	단열재 관통, 조적부위와 골조부위 연결 안 됨	단열재 보완, 조적부위와 골조부위 연결 쌓기	조적부위와 골조부위 연결을 통한 방수 취약부위 보완
5	공용공통	제연덕트(P.D)크기 변경(축소)	슬라브개구부 : 800*1620 650*1620	슬라브개구부 : 600*900 600*900	제연 환기량에 따른 SLAB OPEN 변경 (아파트 E/V홀 바닥)

NO	구분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유
6	공용부위		PIT층 환기창 추가	1,2,3,4,5,7,10동 환기창 없음	1,2,3,4,5,7,10동 환기창 있음	아파트 하부 PIT층 걸로 방지 위한 환기 그릴창 설치
7	외벽		입면도 수정(110동)	21층	20층	입면도 표기오류 수정(1개층 삭제)
8	공용공통		E/V홀 2층 외부창호 크기변경	1,2,3,4,7,10동 AW : 2,000 * 900	1,2,3,4,7,10동 AW : 2,000 * 650	천장마감을 위하여 외벽 개구부 높이 조정(창 상부를 높이를 내림)
9	공용공통		계단창 하부 벽체높이 변경(창위치 상향)	전동 계단창 바닥에서 H : 1,200	전동 계단창 바닥에서 H : 1,360	창 안전높이(H : 1,200이상) 확보를 위한 벽체높이 변경

NO	구분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유
▷ 부 속 동						
10	경로당		경로당 단면도 변경	경로당 바닥높이를 세대 바닥 높이로 표기	경로당 바닥높이를 피로티 바닥 높이로 표기	단면 표기 오류 수정
11	경로당		욕실, 현관 단열재 위치변경	슬라브 하부 비드법2종1호 T140	슬라브 상부 비드법2종1호 T130 슬라브 하부 비드법2종1호T60	경로당 단면도 수정에 따른 변경으로 바닥마감 높이를 주변 피로티 바닥마감 높이에 맞추기 위하여 단열재 배치 변경
12	주민공동 시설		슬라브 바닥 레벨 조정	슬라브 바닥 S.L : 39.75 F.L : 40.00	슬라브 바닥 S.L : 39.9 F.L : 40.1	주차장바닥 S.L과 같게 하여 누수 방지 및 마감높이를 주차장보다 높게 하여 표면수 유입 방지.
13	주민공동 시설		1. 화장실 하부 PIT 크기변경. 2. 독서실(여) 외벽 곡선벽체 직선으로 변경	1. PIT 9,100 * 8,600 2. 외벽 곡선	1. PIT 4,950 * 8,600 2. 외벽 직선	1. T/C기초와 간섭으로 PIT 크기 변경(불필요한 공간 삭제). 2. 입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 활용성 향상.
14	옥외계단2		옥외계단2 B2 출입문 추가	지하주차장 방향 출입문 없음	지하주차장 방향 출입문 생성	입주민 편의를 위한 출입문 추가
15	지하 저수조		지하저수조 창호 삭제	창호 2개소 있음	창호 삭제	창호 삭제로 미관개선 및 성능 향상 (내부배관 동파 방지)
16	어린이집		1층 바닥 단면도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골조 및 단열 등 마감상세 변경
17	빗물 이용시설		빗물이용시설 중층 PIT 신설	중층 PIT 없음	중층 PIT 추가	빗물이용시설 점검층 추가(기능개선)
18	발전기실		D.A그릴창 조정	D.A그릴창 방향 나란히 배치	D.A그릴창 방향 엇갈리게 배치	급기. 배기의 간섭을 최소화 해서 성능 향상.
19	옥외계단3		옥외계단3 과 장애인E/V 층수 조정	P2지하2층~지상층 (3개층)	P1지하1층~지상층 (5개층)	입주예정자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계단 층수 변경 및 엘리베이터 층수 변경

NO	구분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20	지하 주차장		1. 주차구획 삭제, 이동, 신설(장애인주차장 포함) 2. P2램프 삭제 3. 외부계단3 E/V피트 위치 변경 4. 재활용품 보관소 이동	1. 주차대수 : 1,260대 2. P2램프 있음. 3. 외부계단3 E/V피트 위치 : P1 지하1층 천장 4. 107동 재활용품 보관소	1. 주차대수 : 1,271대 2. P2램프 삭제. 3. 외부계단3 E/V피트 위치 : P1 지하2층 바닥 4. 소방램프 PIT 재활용품 보관소	입주예정자 요구사항(옥외계단3 변경) 반영에 따른 주차구획 등 변경
21	경비실		유리변경 (복층유리→로이복층유리)	1.SSD1(3.5x1.6) 12MM강화유리(일부 불투명 쉬트지 부착) 24MM복층유리 2.CAW1(4.3x1.6) THK40X122.5 알미늄,24MM복층유리 3.PW2 24MM 복층유리 4.PW3 24MM 복층유리	1.SSD1(4.3x1.6) 12MM강화유리(일부 불투명 쉬트지 부착) 24MM 로이(소프트코팅)(아르곤) 복층유리 (6LE+12Ar+6LE) 2.PW1(4.3x1.6) 24MM 로이복층유리 (6LE+12Ar+6LE) 3.PW2 24MM 로이복층유리 (6LE+12Ar+6LE) 4.PW3 24MM 로이복층유리 (6LE+12Ar+6LE)	에너지절약계획 협의에 따른 보완사항으로 단열기준에 맞는 창호로 변경

▷ 근린생활시설

22	바닥		바닥 단열재 위치 변경	슬라브 하부 비드법 2중1호 T 175	슬라브 상부 비드법 2중1호 T 175	시공 정밀성 개선 및 단열성능 향상 (터파기면에 단열재를 시공하도록 되어있어 지중보 옆면 등은 단열재 정밀시공이 불가능하여 지중보 및 지반층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후 단열재를 시공하고 누름콘크리트를 추가 시공하여 정밀시공 및 단열재 불량시공에 따른 열교를 방지 함)
23	계단실		외벽 창호 크기 변경	AW2 : 2,300*2,700	AW2 : 2,300*2,100	인방보(G3) 추가로 인한 개구부 크기 변경
24	근린생활 시설2		동 배치 변경	근생1 구간별 건축선 후퇴 거리 3.103M, 2.668M	근생1 구간별 건축선 후퇴 거리 3.140M, 3.080M	건축선 후퇴 거리(3M 이상) 확보 위한 배치 조정
				근생2 2.833M, 2.780M	근생2 3.132M, 3.067M	
25	근린생활 시설1		벽 단열재 일부 위치 변경	내단열	외단열	건축선 후퇴 거리(3M 이상) 확보을 위한 단열재 위치 조정

■ 구조

NO	구분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 아파트					
1	세대공통	84A타입 발코니2 외부벽체 W10과 W11사이 ab4를 일반벽체로 변경	ab4 보	W10	건축도면 현황에 맞게 구조도면 수정
2	세대공통	실외기실 인방보(ab3) 배근도 추가	8 - HD13	12 - HD13	환기용 슬리브(∅125 2개소) 설치에 따른 단면 결손에 대한 철근 배근도 추가
3	공용공통	아파트 3층~기준층 계단실, E/V홀 보(ab6) 표기오류로 인한 정정	계단실, E/V홀 보 : ab3, ab6	계단실, E/V홀 보 : ab3 변경	보 표기 오류
4	공용공통	주동 출입구 상부 보 일람표 변경	ab5 : 250*900 ab6 : 300*900	ab5 : 400*600 ab6 : 500*600	건축도면에 맞게 보일람표 변경
5	6,7,8,9, 10동	벽체 일람표 오류 수정 (106~110동 2,3호 사이 간벽)	W21 : THK220	W21 : THK200	2,3호 세대 간벽으로 도면표기 오류사항 수정
6	세대공통	벽체 배근도 표기오류 수정(아파트 벽체 공통)	변경전 도면 참조(단순 축척 오류)	변경후 도면 참조(치수 축척 수정)	벽체두께, 길이가 구조계산서 및 마감도면과 상이하여 구조계산서에 맞춤

NO	구분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 주차장						
7	빗물이용시설		1. 빗물이용시설 중층PIT 생성 2. 천창 위치 변경	1. 빗물이용시설 중층PIT 없음 2. 천창 위치 트레이 간섭	1. 빗물이용시설 중층PIT 생성 2. 천창 위치 트레이 간섭 없음	1. 중층PIT추가로 인한 해당 구조도면 추가 2. 지하주차장내 기계/전기 트레이 간섭에 따른 위치 변경
8	비상램프3		비상램프3 상단 끝부분 접하는곳 PIT층 추가 (X17-X21, Y22-Y23)	PIT층 없음	PIT층 추가	인접대지의 토압에 따른 구조 내력보강임
9	지하주차장		데크플레이트→일반 슬래브 골조변경	1. 데크 플레이트 스텔	일반 합판거푸집 스텔	데크스래브 시공이 곤란한 부분에 일반 합판거푸집 스텔공법 적용 (단열재 부착타설부위, 층간경사로 주변에서 콘크리트 이어치기시, 타워크레인 간섭부분, 이형부위 등)
10	지하저수조		평면도와 일람표의 보 폭 표기 상이	보폭 변경 전 G9,G9C,D,E : 500	보폭 변경 후 G9,G9C,D,E(-2) : 800	지하저수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 크기 변경(상향) 및 보 꺾임부위 수정
11	지하주차장 기초일람표-1		부호 명 오기 수정	WF1B	WF1A	오기 수정
12	데크 단면도 및 슬라브 배근도-2		데크플레이트 일람 변경	DS3 : 하현재 D12	DS3 : 하현재 D10	표기 오류로 인한 변경 (구조계산에 맞춤)
13	지하주차장 외벽일람표-3		헬름2 상부 벽체 배근도 추가	없음	추가	헬름2 지상부분 벽체 구조도 추가
14	지하주차장 어린이집하부		어린이집 하부 보 배근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어린이집 바닥골조와 지하주차장 골조를 연계 시킴
15	지하주차장		P2주차장 재활용센터 슬라브 신규생성	변경 전	변경 후	입주예정자 요구사항(옥외계단3 변경) 반영으로 재활용센터 위치이동에 따른 슬라브 신규생성

▷ 근린생활시설

NO	구 분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유
1	지하2층 근린생활시설 기초평면도		근린생활시설2 기초형식 변경	파일기초	제자리기초	제자리기초로 변경시 지내력을 확보할수 있어 변경(암지반선이 높아 파일 관장 길이 확보가 곤란함)

■ 설 비

NO	구 분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유
1	설비		배관 재질변경 (난방, 온수관)	흑강관(난방배관)	스텐리스강관(난방배관)	하차예방 및 성능향상
2	설비		배관 재질변경 (오배수, 지하 횡주관)	오배수 배관 재질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비닐플로나이트	오배수 배관 재질 PVC VG-1	성능향상 및 시공성 향상
3	설비		저수조 내부 탱크 내진탱크 적용	저수조 내부 소화수조 평면구획(별도설치)	저수조 내부 소화용수 포함 내진탱크 적용	성능향상 및 규정에 적합하게 변경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46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2021년 2차 조직개편으로, 국가정책 및 현안업무 추진 인력 배치에 따른 증원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조정 : 증원 98명
 - 1,292명 ⇒ 1,390명
- 직급별 정원 조정 **【안 별표 3】**
 - (일반직) 1,287명 ⇒ 1,385명 (증 98명)
 - 5급 : 71명 ⇒ 73명(증 2명)
 - 6급 이하 : 1,207명 ⇒ 1,303명(증 96명)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042, 팩스 032-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2021년 2차 조직개편으로, 국가정책 및 현안업무 추진 인력 배치에 따른 증원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조정 : 증원 98명
 - 1,292명 ⇒ 1,390명
- 직급별 정원 조정 【안 별표 3】
 - (일반직) 1,287명 ⇒ 1,385명 (증 98명)
 - 5급 : 71명 ⇒ 73명(증 2명)
 - 6급 이하 : 1,207명 ⇒ 1,303명(증 96명)

3. 참고사항

- 개 정 안 : “별지 참조”
-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별첨”
- 관계법령 발취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292명”을 “1,39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272명”을 “1,37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u>1,292명</u>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u>1,272명</u></p> <p>2.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u>1,390명</u>----- -----.</p> <p>1. ----- <u>1,370명</u></p> <p>2. (현행과 같음)</p>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출장소	동
총 계	1,390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385	-				
2급	1	1				
4급	8	6	1	1		
5급	73	39	2	8	1	23
6급 이하 계	1,303	-				
연구직 계	1	-				
연구사	1	-				
별정직 계	3	-				
6급 상당 이하 계	3	-				

[붙임 1]

비용소요 추계서

(단위 : 원, 명, 월)

구 분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비 고
		내역	단가	인원	비율 등	월(회)수	계	
총계	4,248,097,857							
1. 인건비	3,680,187,307							
가. 기본급	2,904,832,000	○ 5급(연봉제)	82,295,000	2			164,590,000	
		○ 6급(19호봉)	3,767,400	11		12	497,296,800	
		○ 7급(10호봉)	2,746,500	26		12	856,908,000	
		○ 8급(4호봉)	1,930,700	65		12	1,505,946,000	
		○ 9급(2호봉)	1,665,400	-6		12	-119,908,800	
나. 상여금	179,131,307	○ 정근수당	2,904,832,000		0.08	2	179,131,307	90%평균
다. 정액수당	596,224,000							
1)가족수당	71,500,800	○ 배우자	40,000	98	0.78	12	36,691,200	
		○ 존비속	20,000	98	1.48	12	34,809,600	
2)정근수당가산금	69,600,000	○ 25년 이상	130,000	2		12	3,120,000	
		○ 20년~25년미만	110,000	5		12	6,600,000	
		○ 15년~20년미만	80,000	6		12	5,760,000	
		○ 10년~15년미만	60,000	26		12	18,720,000	
		○ 5년~10년미만	50,000	59		12	35,400,000	
3) 정액급식비	164,640,000	○ 일반직	140,000	98		12	164,640,000	
4) 명절휴가비	290,483,200	○ 명절휴가	2,904,832,000	98	0.05	2	290,483,200	
2. 직무수행경비	161,040,000							
가. 직책급업무추진비	2,400,000	○ 5급	100,000	2		12	2,400,000	
나. 직급보조비	158,640,000	○ 5급	250,000	2		12	6,000,000	
		○ 6급	155,000	11		12	20,460,000	
		○ 7급	140,000	26		12	43,680,000	
		○ 8급	125,000	65		12	97,500,000	
		○ 9급	125,000	-6		12	-9,000,000	
3. 포상금	406,870,550							
가. 성과상여금	406,870,550	○ 5급(연봉제)	5,585,000	2	1.25	1	13,962,500	A등급
		○ 6급	4,168,270	11	1.25	1	57,313,713	A등급
		○ 7급	3,543,900	26	1.25	1	115,176,750	A등급
		○ 8급	2,943,890	65	1.25	1	239,191,063	A등급
		○ 9급	2,503,130	-6	1.25	1	-18,773,475	A등급

※ 수당 중 위험근무, 대우공무원, 관리업무, 특수업무, 민원업무, 전산업무, 장려, 의회사무, 의료업무, 동근무, 사회복지업무, 초과 근무 등 제수당은 개인별 격차가 광범위하고 산발적이므로 추계하지 않음

의 건 제 출 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별	제 출 의 건	검 토 내 용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46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2021년 2차 조직개편으로, 국가정책 및 현안업무 추진 인력 배치에 따른 증원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조정 : 증원 98명
 - 1,292명 ⇒ 1,390명
- 직급별 정원 조정 **【안 별표 3】**
 - (일반직) 1,287명 ⇒ 1,385명 (증 98명)
 - 5급 : 71명 ⇒ 73명(증 2명)

- 6급 : 304명 ⇒ 315명(증 11명)
- 7급 : 375명 ⇒ 401명(증 26명)
- 8급 : 318명 ⇒ 383명(증 65명)
- 9급 : 210명 ⇒ 204명(감 6명)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 통합

- 행정안전부 표준안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042, 팩스 032-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개정이유

- 2021년 2차 조직개편으로, 국가정책 및 현안업무 추진 인력 배치에 따른 증원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조정 : 증원 98명
 - 1,292명 ⇒ 1,390명
- 직급별 정원 조정 **【안 별표 3】**
 - (일반직) 1,287명 ⇒ 1,385명 (증 98명)
 - 5급 : 71명 ⇒ 73명(증 2명)
 - 6급 : 304명 ⇒ 315명(증 11명)
 - 7급 : 375명 ⇒ 401명(증 26명)
 - 8급 : 318명 ⇒ 383명(증 65명)
 - 9급 : 210명 ⇒ 204명(감 6명)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 통합
 - 행정안전부 표준안으로 개정

3. 참고사항

- 개 정 안 : “별지 참조”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별첨”
- 관계 법령 발취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항 중 “정원 중 3명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으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를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는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두는 공무원의 <u>정원 중 3명</u>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u>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u>으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p>	<p>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 -----<u>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u>할 수 있다.</p>

[별표 1]

인천광역시 서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총 계	1,390	842	20	120	45	363	(9)
정 무 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 반 직 계	1,385	837	20	120	45	363	(9)
2급 소계	1	1					
이 사 관	1	1					
4급 소계	8	6	1	1			
서 기 관	2	1	1				
기 술 서 기 관	2	1		1			
서 기 관 · 기 술 서 기 관	4	4					
5급 소계	73	39	2	8	1	23	
행 정	10	8	2				
의 무	4			4			
행 정 · 사 회 복 지	5	5					
행 정 · 공 업	2	2					
행 정 · 보 건	1	1					
행 정 · 환 경	2	2					
행 정 · 시 설	12	12					
행 정 · 방 송 통 신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 공 업	2					2	
행 정 · 사 회 복 지 · 농 업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 녹 지	4					4	
행 정 · 사 회 복 지 · 보 건	4					4	
행 정 · 사 회 복 지 · 환 경	2					2	
행 정 · 사 회 복 지 · 시 설	4					4	
행 정 · 사 회 복 지 · 방 송 통 신	1					1	
행 정 · 공 업 · 농 업	2					2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행정 · 공업 · 환경	1	1					
	행정 · 공업 · 시설	1	1					
	행정 · 농업 · 수의	1	1					
	행정 · 녹지 · 시설	1	1					
	행정 · 보건 · 환경	1	1					
	행정 · 보건 · 시설	1					1	
	행정 · 환경 · 시설	2	1				1	
	보건 · 의료기술 · 간호	1			1			
	행정 · 사회복지 · 녹지 · 시설	1					1	
	행정 · 사회복지 · 보건 · 시설	1	1					
	행정 · 녹지 · 환경 · 시설	1	1					
	행정 · 보건 · 의무 · 간호	1			1			
	행정 · 공업 · 농업 · 시설	1				1		
	행정 · 보건 · 의료기술 · 간호	2			2			
	6급 소계	315	220	8	21	13	53	
행	정	90	74	4	1	1	10	
세	무	18	16			2		
전	산	1	1					
사	회 복 지	18	18					
속	기	2		2				
공	업	8	7			1		
농	업	1	1					
녹	지	6	5			1		
수	의	1	1					
보	건	5	5					
의	료 기 술	1			1			
간	호	1			1			
환	경	6	6					
시	설	26	24			2		
방	송 통 신	1	1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운 전	6	3	1		1	1	
	전 화 상 담 운 영	1	1					
	사 무 운 영	2	1			1		
	행 정 · 세 무	13	9			1	3	
	행 정 · 사 회 복 지	39	9	1			29	
	행 정 · 공 업	2	2					
	행 정 · 농 업	1				1		
	행 정 · 녹 지	2	1				1	
	행 정 · 보 건	5	2			1	2	
	행 정 · 간 호	1					1	
	행 정 · 환 경	7	5				2	
	행 정 · 시 설	13	13					
	행 정 · 방 송 통 신	4	3				1	
	사 회 복 지 · 간 호	1			1			
	공 업 · 보 건	1	1					
	공 업 · 환 경	1	1					
	녹 지 · 시 설	1	1					
	보 건 · 간 호	1			1			
	보 건 · 환 경	1	1					
	식 품 위 생 · 간 호	1			1			
	의 료 기 술 · 간 호	2			2			
	환 경 · 시 설	1	1					
	시 설 · 방 재 안 전	1	1					
	행 정 · 세 무 · 공 업	1					1	
	행 정 · 세 무 · 농 업	1					1	
	행 정 · 세 무 · 방 송 통 신	1					1	
	행 정 · 공 업 · 환 경	2	2					
	행 정 · 공 업 · 시 설	2	1			1		
	행 정 · 보 건 · 간 호	2			2			
	행 정 · 보 건 · 환 경	1	1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행정 · 환경 · 시설	1	1					
	보건 · 의료기술 · 간호	9			9			
	식품위생 · 의료기술 · 간호	1			1			
	행정 · 녹지 · 환경 · 시설	1	1					
	보건 · 의료기술 · 약무 · 간호	1			1			
	7급 소계	401	252	4	34	14	97	(1)
행	정	146	87	4		2	53	(1)
세	무	20	18			2		
전	산	6	6					
사	회 복 지	61	31				30	
공	업	9	8			1		
농	업	2	1			1		
녹	지	8	7			1		
수	의	3	3					
해	양 수 산	1	1					
보	건	17	11		5	1		
의	료 기 술	4			4			
간	호	17			17			
환	경	12	12					
시	설	54	49			5		
방	재 안 전	1	1					
방	송 통 신	3	3					
운	전	11	1		1		9	
기	계 운 영	1	1					
사	무 운 영	4	1				3	
행	정 · 세 무	3	2			1		
행	정 · 사 회 복 지	4	2				2	
행	정 · 환 경	1	1					
행	정 · 시 설	4	4					
농	업 · 수 의	1	1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보 건 · 간 호	2			2			
	보 건 · 환 경	1	1					
	식 품 위 생 · 의 료 기 술	2			2			
	보 건 · 의 료 기 술 · 간 호	3			3			
	8급 소계	383	207	4	47	12	113	(5)
	행 정	139	73	3	2		61	(5)
	세 무	9	8			1		
	전 산	2	2					
	사 회 복 지	68	24		2		42	
	공 업	14	14					
	농 업	1	1					
	녹 지	7	6			1		
	보 건	8	4		1	3		
	의 료 기 술	1			1			
	간 호	31			31			
	환 경	17	17					
	시 설	40	35			5		
	방 재 안 전	1	1					
	방 송 통 신	3	3					
	운 전	11		1	1		9	
	전 화 상 담 운 영	1	1					
	기 계 운 영	1	1					
	사 무 운 영	1	1					
	행 정 · 전 산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7	6				1	
	행 정 · 공 업	1	1					
	행 정 · 농 업	1				1		
	행 정 · 간 호	1			1			
	행 정 · 시 설	5	5					
	공 업 · 보 건	1	1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공 업 · 환 경	1				1		
	보 건 · 의 료 기 술	1			1			
	보 건 · 간 호	1			1			
	보 건 · 환 경	2	2					
	식 품 위 생 · 의 료 기 술	1			1			
	보 건 · 식 품 위 생 · 의 료 기 술	3			3			
	보 건 · 의 료 기 술 · 간 호	2			2			
	9급 소계	204	112	1	9	5	77	(3)
	행 정	84	38	1	2	2	41	(3)
	세 무	14	13			1		
	사 회 복 지	41	6		1		34	
	공 업	6	6					
	농 업	1	1					
	녹 지	5	3			2		
	보 건	3	1		2			
	의 료 기 술	2			2			
	환 경	9	9					
	시 설	20	20					
	방 재 안 전	1	1					
	방 송 통 신	3	3					
	운 전	3			1		2	
	행 정 · 세 무	3	3					
	행 정 · 사 회 복 지	4	4					
	행 정 · 보 건	1	1					
	행 정 · 환 경	2	2					
	행 정 · 시 설	2	1		1			
	연 구 직 계	1	1					
	기 록 연 구 사	1	1					
	별 정 직 계	3	3					
	7급 상당 소계	1	1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비 서	1	1					
	8급 상당소계	2	2					
	비 서	2	2					
	9급 상당 소계							
	비 서							

의 건 제 출 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약개요	실·국별	제 출 의 건	검 토 내 용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468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국 변경사항, 부서 신설 및 폐지, 명칭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국 변경사항
 - (부서이동) 위생과(식품산업위생과): 환경안전국 ⇒ 경제교통국
- 부서 신설 및 변경사항
 - (신설) 환경안전국 기후에너지정책과
 - (폐지) 보건소 지역보건과
 - (명칭변경) 경제에너지과 ⇒ 경제정책과
 - 위생과 ⇒ 식품산업위생과
 - 도시기반과 ⇒ 도로과
 - 치매돌봄과 ⇒ 치매정신돌봄과

- 동 신설
 - (신설) 아라동
- 사무 조정
 - 아동학대 심리치료 지원: 가정보육과 ⇒ 아동행복과
 -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안전총괄과 ⇒ 기업지원일자리과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화 032-560-4042, 팩스 032-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국 변경사항, 부서 신설 및 폐지, 명칭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국 변경사항

- (부서이동) 위생과(식품산업위생과): 환경안전국 ⇒ 경제교통국

○ 부서 신설 및 변경사항

- (신설) 환경안전국 기후에너지정책과
- (폐지) 보건소 지역보건과
- (명칭변경) 경제에너지과 ⇒ 경제정책과
- 위생과 ⇒ 식품산업위생과
- 도시기반과 ⇒ 도로과
- 치매돌봄과 ⇒ 치매정신돌봄과

○ 동 신설

- (신설) 아라동

○ 사무 조정

- 아동학대 심리치료 지원: 가정교육과 ⇒ 아동행복과
-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안전총괄과 ⇒ 기업지원일자리과

3. 참고사항

- 개 정 안 : “별지 참조”
-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관 계 법 령 발 취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환경관리과”를 “환경관리과, 기후에너지정책과”로, “공원녹지과, 위생과”를 “공원녹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5호부터 제6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0호 및 91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90.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및 가스관련법 사무

91. 연료수급 및 가스안전관리

제7조의3제1항 중 “경제에너지과”를 “경제정책과”로, “교통정책과”를 “식품산업위생과, 교통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8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위생용품제조업 등 인·허가 및 지도·단속

29. 음식문화 개선관리

30.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3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2.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도시기반과”를 “도로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역보건과, 치매돌봄과”를 “치매정신돌봄과”로 한다.

제17조제15호 중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로 한다.

별표 4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별표 4의 아래동 신설 부분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감사실장”을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실장”을 “미래기획실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

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실·과·소”를 ”실·국·담당관·단·과·소“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미래기획실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기획예산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도시재생경관과장”을 “도시경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홍보정책과장”을 “홍보정책담당관”으로, 제6조제4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5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별표 1의 의료·구호지원반란 중 “예방의약담당”을 “의약관리담당”으로, “질병관리담당”을 “감염병예방담당 ”으로, 같은 표 재정·홍보지원반란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같은 표 통신·전산지원반란 중 “홍보정책과장”을 “홍보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단장·과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 각 국장, 보건소장 또는 실·과장으로 구성한다”를 “실장, 각 국장, 보건소장 또는 담당관·단장·과장”으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⑯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도시개발과장”을 “도시기획담당관”으로 하고, 별표 1의 공표 부서란 중 “기획예산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⑰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서구 주관부서란 중 “홍보정책과”를 각각 “홍보정책담당관”으로, “기획예산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5 가. 경계단계 실무반란 중 “기획예산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홍보정책과”를 “홍보정책담당관”으로, 나. 비상1단계 실무반란 중 “기획예산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홍보정책과”를 “홍보정책담당관”으로, 다. 비상2~3단계 실무반란 중 “기획예산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홍보정책과”를 “홍보정책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6 실무반란 중 “기획예산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홍보정책과”를 “홍보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⑱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한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홍보정책과장”을 “홍보정책담당관”으로, “도시재생경관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⑲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

⑳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의2제6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지원일자리과장”으로, 제16조제1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지원일자리과장”으로 한다.

㉑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도시재생경관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도시재생경관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㉒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㉓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미래도시국장”을 “미래기획실장”으로 한다.

[별표 4] (개정 2017.12.20., 2018.4.18., 2019.9.23.)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80(검암동)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제2조 중 별표 의 관할구역과 같다
연 회 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 12(연회동)	
청라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58(청라동)	
청라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269(청라동)	
청라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89(청라동)	
가정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64번길 11(가정동)	
가정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267번길 10(가정동)	
가정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79번길 12-16(가정동)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35번길 3(신현동)	
석남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294번길 17(석남동)	
석남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 116(석남동)	
석남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07(석남동)	
가좌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12번길 10(가좌동)	
가좌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309번길 4(가좌동)	
가좌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57번길 4(가좌동)	
가좌 4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80번길 14(가좌동)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29번길 14(마전동)	
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14(불로동)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24(원당동)	
아라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바리미로 23(원당동)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67번길 19(당하동)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49(오류동)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0번길 14(마전동)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의2(환경안전국) ① 환경안전국에 <u>클린도시과, 환경관리과, 생태하천과, 안전총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위생과</u>를 둔다.</p> <p>② 환경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4. 삭 제</p> <p>15. ~ 64. (생 략)</p> <p>65. <u>위생용품제조업 등 인·허가 및 지도·단속</u></p> <p>66. <u>음식문화 개선관리</u></p> <p>67. <u>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u></p> <p>68. <u>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u></p> <p>69. <u>식품진흥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u></p> <p>70. ~ 89.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제7조의2(환경안전국) ① ----- ----- <u>환경관리과, 기후에너지정책과</u>----- ----- -----<u>공원녹지과</u>----- -----.</p> <p>② ----- -----.</p> <p>15. ~ 64.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70. ~ 89. (현행과 같음)</p> <p>90. <u>에너지 이용합리화법 및 가스관련법 사무</u></p> <p>91. <u>연료수급 및 가스안전관리</u></p>
<p>제7조의3(경제교통국) ① 경제교통국에 <u>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일자리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u>를 둔다.</p>	<p>제7조의3(경제교통국) ① ----- - <u>경제정책과</u>----- ---<u>식품산업위생과, 교통정책과</u>--- -----.</p>

② 경제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연료수급 및 가스안전관리

6 ~ 10. (생략)

11. 에너지 이용화법 관련사무

12. ~ 27.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8조(도시관리국) ① 도시관리국에 도시기반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생략)

제10조(소장) ① (생략)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치매돌봄과를 둔다.

③ (생략)

제17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 13. (생략)

② -----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6 ~ 10. (현행과 같음)

<삭제>

12. ~ 27. (현행과 같음)

28. 위생용품제조업 등 인·허가 및 지도·단속

29. 음식문화 개선관리

30.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3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2.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도시관리국) ① -----
도로과-----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소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 치매정신돌봄과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소관사무) -----
-----.

1. ~ 13. (현행과 같음)

<p>14. 삭 제</p> <p>15. 세무(<u>재산세, 등록면허세, 각종 세무 제 증명</u>) 업무</p> <p>16. (생 략)</p>	<p>15. ----<u>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u> -----</p> <p>16. (현행과 같음)</p>
---	---

의 건 제 출 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별	제 출 의 건	검 토 내 용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46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국 변경사항, 부서 신설 및 폐지, 명칭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국 변경사항
 - (부서이동) 위생과(식품산업위생과): 환경안전국 ⇒ 경제교통국
- 부서 신설 및 변경사항
 - (신설) 환경안전국 기후에너지정책과
 - (폐지) 보건소 지역보건과
 - (명칭변경) 경제에너지과 ⇒ 경제정책과
 - 위생과 ⇒ 식품산업위생과
 - 도시기반과 ⇒ 도로과
 - 치매돌봄과 ⇒ 치매정신돌봄과

- 동 신설
 - (신설) 아라동
- 사무 조정
 - 아동학대 심리치료 지원: 가정보육과 ⇒ 아동행복과
 -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안전총괄과 ⇒ 기업지원일자리과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화 032-560-4042, 팩스 032-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제안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국 변경사항, 부서 신설 및 폐지, 명칭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국 변경사항

- (부서이동) 위생과(식품산업위생과): 환경안전국 ⇒ 경제교통국

○ 부서 신설 및 변경사항

- (신설) 환경안전국 기후에너지정책과
- (폐지) 보건소 지역보건과
- (명칭변경) 경제에너지과 ⇒ 경제정책과
 - 위생과 ⇒ 식품산업위생과
 - 도시기반과 ⇒ 도로과
 - 치매돌봄과 ⇒ 치매정신돌봄과

○ 동 신설

- (신설) 아라동

○ 사무 조정

- 아동학대 심리치료 지원: 가정보육과 ⇒ 아동행복과
-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안전총괄과 ⇒ 기업지원일자리과

3. 참고사항

- 개 정 안 : “별지 참조”
-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관계 법령 발췌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를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래기획단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조 중 “공동체협치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세무1과장”을 “공동체협치과장, 세무1과장”으로 한다.

제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생태하천과장”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생태하천과장”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5조의3 전단 중 “경제에너지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을 “지방수의사무관으로, 기업지원일자리과장”으로, “교통정책과장”을 “식품산업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제6조 중 “도시기반과장”을 “도로과장”으로,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 중 “지역보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의료지방기술사무관으로, 치매돌봄과장”을 “치매정신돌봄과장”으로, “치매돌봄과장은 부센터장을 겸한다”를 “치매정신돌봄과장은 부센터장을 겸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지역보건과, 치매돌봄과”을 “치매정신돌봄과”으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청라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청라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으로, “청라3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을 “청라3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으로,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하며”를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아라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장·보건소장 및 감사부서의 장”을 “실장·국장·보건소장 및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사실장”을 “감사부서의 장”으로,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사실”을 “감사담당관”으로, 제15조제1항 중 “감사실장”을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중 “감사실”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2호 및 5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단·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단·과장”으로 하고, “실·과 단위”를 “담당관·단·과 단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실·과”를 “담당관·단·과”로, 같은 조 제3항 중 “소관 실·과장”을 “소관 담당관·단·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실·과·담당중에서”를 “담당관·단·과·담당중에서”로 하며, 제10조제2항 중 “실·과”를 “담당관·단·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 단·실·관·과·소·동”을 “담당관·단·과·소·동”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미래기획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실·과·소·동장“을 ”담당관·단·과·소·동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를 “담당관·단·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기획예산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서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기획예산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기획

예산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3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중 “실·과”를 각각 “담당관·단·과”로, 제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실·과장”을 각각 “담당관·단장·과장”으로, “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서구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 본문,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2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 본문 중 “기획예산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중 “실·과”를 각각 “담당관·단·과”로 한다.

별지 제1호규격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제출자 란의 “실·장”을 “담당관·단장·과장”으로,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입법예고 결과 란 중 “실·과별”을 “담당관·단·과”

⑪ 인천광역시서구행정동향보고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각 실과 소관”을 “각 담당관·단·과 소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단·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실과”를 “ 담당관·단·과” 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각각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6(미래기획실) 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u>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u>, 미래기획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홍보정책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기획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p>	<p>제3조의6(미래기획실) ①----- ----- ----- <u>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u>----- ----- ----- ----- ----- ----- ----- ----- ----- -----.</p>
<p><신 설></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래기획단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p>
<p>제4조(자치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u>공동체협치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u>, <u>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u>, <u>세무1과장, 세무2과장, 민원봉사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u> 보한다.</p>	<p>제4조(자치행정국) ----- ----- <u>재무과장</u>----- ----- ----- <u>공동체협치과장,</u> <u>세무1과장</u>----- -----.</p>

공업사무관으로, 기업지원일자리과
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
 업사무관으로, 교통정책과장은 지
 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
 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차관리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
 시설사무관으로, 차량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
 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도시관리국) 국장은 지방기술
 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기반과장
 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
 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재생과장
 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
 시설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
 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보건소) 소장은 지방기술서기
 관으로 보하고, 보건행정과장은 지
 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
 사무관으로, 감염병대응과장은 지

의사무관으로, 기업지원일자리과
 장

 -----식품산업위생과
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
 건사무관으로, 교통정책과장-----

제6조(도시관리국) -----
 ----- 도로과장-----

----- 지방
행정사무관 -----

제8조(보건소) -----

방 행정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지역보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의료지방기술사무관으로, 치매돌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며, 이 중 보건소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장을, 치매돌봄과장은 부센터장을 겸한다.

제9조(사무분장) 보건소에 두는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치매돌봄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동장의 직급) 검암경서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연희동장, 석남2동장, 당하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청라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청라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치매정신돌봄과장-----

치매정신돌봄과장은 부센터장을 겸한다.

제9조(사무분장) -----

 - 치매정신돌봄과-----
 -----.

제12조(동장의 직급) -----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청라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녹지사

구 본청 사무분장표 (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감 사 담 당 관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조정
	2.	감사 및 그 결과 조치
	3.	비위공무원 처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4.	신문, 방송 등 언론보도사항 조사처리
	5.	청원진정서 처리(다수인 민원 포함)
	6.	상급기관 이첩사항 조사처리
	7.	사무인수인계사항 확인
	8.	감사사항의 기록관리 및 통계분석
	9.	공직기강쇄신 추진에 관한 감찰
	10.	청렴도 관련 업무
	11.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12.	회계에 대한 실지 감사
	13.	일상감사에 관한 업무
	14.	계약심사에 관한 업무
	15.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16.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전담창구 운영
	17.	가로환경 순찰 업무

구 분 청 사 무 분 장 표 (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소 통 협 력	1.	구청장 직소민원(온라인 포함) 관리
담 당 관	2.	현장 구청장실 운영
	3.	갈등조정 종합관리
	4.	민원조정 및 부서지정·분류
	5.	갈등전문가 위촉·운영
	6.	갈등대상사업관리 및 교육
	7.	소통1번가 총괄
	8.	민원분석 툴 운영
	9.	민원 빅데이터 수집·분석·모니터링·예보(온·오프라인)
	10.	민원사무처리 실태점검 및 조치
	11.	민원만족도 조사 및 평가
	12.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13.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서버유지 관리
	14.	소셜미디어 운영활성화 및 블로그 기자단 관리
	15.	구분청 및 산하기관 도메인 유지 관리

구 본청 사무분장표 (제7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기 획 예 산 담 당 관	1.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3.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4.	지시사항 처리총괄(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 구청장 등)
	5.	공무원 관내외 출장·통제
	6.	기구직제 및 정원관리
	7.	기구 및 정원조정
	8.	조직 및 인력진단
	9.	사무이양 및 위임전결
	10.	주간, 월간,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11.	구의회 운영 지원
	12.	의회와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관한 업무
	13.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재의요구
	14.	의회운영상황 동향 보고
	15.	의회운영 및 제도개선 요구
	16.	행정자료실 운영
	17.	구정 특수시책 개발 및 추진
	18.	구정업무 연구 연찬
	19.	구민아이디어 제안 접수 및 개발
	20.	구정시책 발굴 및 평가
	21.	구정 청사진개발 및 비전제시
	22.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총괄 및 확인평가
	23.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및 행정협정 체결
	24.	해외사절단 파견 등 계획 수립
	25.	외국 또는 외국기관과의 섭외
	26.	국제자매도시 협의회 운영
	27.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28.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29.	총괄 기금 관리

부서명	분장사무
	30. 세출예산 연간배정계획 수립
	31. 분기별, 월별 예산배정 및 재배정
	32. 재정계획 수립 및 심의위원회 운영
	33. 자원조정교부금 관리
	34. 지방채, 일시차입금, 조상총용총담금, 채무부담행위 조정
	35.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에 관한 사항
	36. 국고보조금 신청
	37. 세입·세출 실행예산 편성
	38. 예비비 지출 및 승인요구
	39. 지방채 발행 및 승인요구
	40. 명시이월사업 승인요구
	41.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관리
	42. 교육예산 지원 승인요구
	43. 세출예산 이체
	44. 세출예산 이용
	45. 세출예산 전용
	46. 세입세출예산 성립전 경비 사용
	47.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48. 기금출연 및 특별회계 전출금 조정
	49. 구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50. 조례, 규칙, 예규, 훈령의 제·개정, 폐지 및 심사 공포
	51. 고시, 공고, 예규, 훈령 등 중요문서의 심사
	52. 법제자료의 조사 수집연구
	53. 법령 및 자치법규 질의 해석
	54.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
	55. 구 자치법규 및 예규문서 편찬 간행
	56.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57.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
	58. 소송사건 처리 결과의 심사 및 조사연구
	59.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60. 법률고문 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61.	공탁금 지출 및 회수
	62.	통계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63.	통계기준의 설정 및 조정
	64.	통계분석 및 통계작성의 통제
	65.	통계의 분석 공표
	66.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간행물 발간
	67.	도·소매인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68.	인구주택 총조사
	69.	한국도시연감 자료수집
	70.	인천사회지표 통계조사
	71.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72.	지역내총생산(GRDP)추계 자료조사
	73.	광공업 통계조사
	74.	산업총조사
	75.	고용구조 통계조사
	76.	기타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77.	통신종합계획 수립시행
	78.	FAX 시설운영 유지관리
	79.	행정 방송시설 운영 유지관리
	80.	통신보안 관리
	81.	각종 통신회선(행정통신, 전산회선 등)의 통합관리
	82.	구분청 및 산하기관의 통신 개발계획 수립 시행
	83.	통신기술 교육 훈련
	84.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준공
	85.	기타 행정통신에 관한 사항
	86.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운영관리
	87.	지방분권·균형발전 업무 추진
	88.	지역특화사업 추진
	89.	사업별 예산 편성 운영
	90.	사업별예산제도를 도입한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
	91.	시설관리공단 총괄관리 및 지휘감독

부 서 명	분 장 사 무	
	92.	관계기관 및 민간연계 협력체계 구축
	93.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무
	94.	지방행정 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95.	전략적 평가 관리(국정평가·군구평가·자체평가)
	96.	통합전략관리시스템 운영

[별표 1]

구 본청 사무분장표 (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미 래 기 획 단	1.	구정현안에 대한 전략사업 추진
	2.	국·시책사업 현안사항 관리
		가. 경단신도시 개발사업
		나.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다. 서북부환승센터 조성사업
		라.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마.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바. 가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사. 경인아라뱃길 조성사업
		아.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사업 관리
		자. 광역도로사업 관리 등
	3.	국·시책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협의(완료된 사업 제외)
	4.	공공기관 서구 유치
	5.	민간투자 서구 유치
	6.	생태문화관광벨트사업
7.	지역상생발전사항	
8.	미래소통 업무	
9.	기타 현안사항(군부대 이전지 활용방안)	

구 본청 사무분장표 (제7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스마트에코 시티추진단	1.	스마트에코시티 사무 총괄
	2.	스마트에코시티 구상 및 기획
	3.	스마트에코시티 종합계획
	4.	스마트에코시티 위원회 운영
	5.	총괄건축가 업무 지원
	6.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총괄건축가)
	7.	건축 및 도시행정에 대한 전반적 자문
		(가) 건축물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자문
		(나) 각종 개발사업(신도시·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 등) 자문
		(다) 공공사업의 건축디자인 통합·조정 지원
		(라) 도시경관 향상 및 공원·녹지조성사업 자문
		(마) 지역 유희공간 등 발굴 및 개선에 대한 지원
		(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문
	8.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
		(가)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추진
		(나)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다) 스마트시티 공모 및 시범사업
	(라)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	
	(마) 스카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및 운영	
	(바) 스마트시티 관련 민원 처리	
9.	도시경관사업 계획수립	
10.	도로 및 가로시설물 경관사업	
11.	수시 경관사업 추진	
12.	경관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13.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주택 재건축사업 제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인가에 관한 사무	
1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구 본청 사무분장표 (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홍 보 정 책 담 당 관	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2.	국·시·구청시책의 홍보
	3.	구청홍보물 제작 및 관리
	4.	고시·공고·공보 발간에 관한 업무
	5.	구보(구청신문) 발간·배부
	6.	홍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업무
	7.	행정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시행
	8.	행정 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운영(전산장비, PC, S/W)
	9.	구본청 및 산하기관 정보보안 종합계획 수립 및 교육
	10.	전산장비 도입 및 운영관리
	11.	유·무선 네트워크 운영 관리
	12.	정보화교육(직원 및 구민) 실시
	13.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관리
	14.	공통기반시스템 운영관리
	15.	기타 정보·IT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6.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관리
	17.	지역정보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18.	사랑의 PC 무상보급 및 무상수리
	19.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수립 및 교육, 점검
	20.	정보기술아키텍처(EA) 도입 및 운영
	21.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추진
	22.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조정
	23.	스마트워크 추진 및 원격근무 IT서비스 지원(클라우드, GVPN 등)
	24.	u-City 사업 추진
	25.	정책사진 관리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도 시 기 획 담 당 관	1.	도시개발사업 예산 및 특별회계관리
	2.	도시개발사업 보상업무
	3.	도시개발사업 청산금 징·교부
	4.	도시개발사업 토지등기
	5.	도시개발사업 체비지관리 및 매각
	6.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7.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계획수립 요청·실시계획인가 신청
	8.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조성공사 시행
	9.	환지예정지 지정·인가 및 처분
	10.	환지예정지 관리 및 사용허가
	11.	미불용지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12.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13.	잔여지 보상에 관한 사항
	14.	미협약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15.	수용재결에 따른 입회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16.	도서·낙도 개발사업 추진
	17.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18.	도시계획에 관한 사무
	19.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사무
	20.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무
	21.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무
	22.	항만 관련 사무

구 본청 사무분장표 (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총 무 과	1.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보수 및 연금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건강보험 업무
	4. 방위협의회 운영
	5. 직장복지금고 및 구내식당 운영
	6.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7. 행정공제회 관리
	8. 청사경비 및 방호관리
	9. 직장민방위 및 자치예비군 운영 관리
	10. 의식행사 의전 및 접대에 관한 사항
	11. 민간에 대한 포상 및 표창
	12. 공무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3. 회의실 운영 관리
	14. 구기등에 관한 사무
	15. 공무원 복무 및 휴가
	16. 직원월례조회 및 시무식·종무식
	17. 청내 사무실 조정
	18. 공무원 인사(구소속공무원 임용권)
	19. 인사제도의 기획 및 운영
	20. 근무성적 평정 및 경력 평정
	21. 공무원 신원조사 의뢰
	22. 공무원증 발급
	23. 소·동 행정지도 감독
	24. 동의 명칭, 위치, 구역의 변경(행정구역 조정)
	25. 시책업무 추진
	26. 공무원 교육
	27. 공무직근로자 관리
	28. 반상회 운영

부 서 명	분 장 사 무
	29. 통·반조직 운영
	30. 여론 및 동향관리
	31. 공무원 표창
	32. 공무원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33. 적십자회비 모금
	34. 단체관리(바르게살기운동)
	3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관한 사무
	36. 공무원 제안제도 및 행정제도 개선
	37.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
	38. 인구통계(내국인/외국인) 작성 및 외국인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권한 관리
	39. 행정사 사무 업무
	40. 선거 및 국민투표
	41. 사무편람 제작 및 지도·점검
	42. 사회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조정
	43. 새마을 단체 및 지도자 관리
	44. 새마을 정신계도 홍보 및 교육
	45. 새마을 장학금 운영
	46. 도시새마을운동 추진
	47. 새마을 시설물 관리·지도
	48.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49. 국민운동 관련 시책 추진
	50. 민간단체보조에 따른 보조금 관리
	51. 해병전우회 관한 사항
	52. 공무원단체 지원업무
	53.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54. 공무원직 노조 지원업무
	55. 그 밖의 타 실·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56. 공무원 호봉 및 근무년수 관리
	57.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58.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 지원

부 서 명	분 장 사 무	
	59.	동청사 건립 종합계획 수립
	60.	동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61.	자원봉사센터 지원 및 관리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공동체협치과	1.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민·관 협치 활성화 및 지원 업무
	3.	주민참여예산
	4.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 및 활동 지원
	5.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
	6.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운영
	7.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8.	공유경제 및 협동조합 관련 사무
	9.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사업 추진
	10.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생산품 또는 서비스 우선구매 장려
	11.	청년정책에 관한 사무
	12.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구 본청 사무분장표 (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재 무 과	1.	각종 회계관리
	2.	세입 세출외 현금관리
	3.	공사의 도급인부와 공급운반
	4.	현금,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5.	회계문서의 심사 및 업무지도
	6.	공사·제조·물품구입 수선의 입회
	7.	지출원인행위부 정리
	8.	회계관리 직인 보관 관리
	9.	회계증빙서류 보관
	10.	출입업자 지정 및 입찰업자 지명
	11.	시유 잡종재산의 유지관리
	12.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유지관리
	13.	물품정수관리 및 수납계획 수립
	14.	관용차량의 정수조정 및 관리 지정
	15.	물품관리 지도 감독
	16.	기획재정부 소관 잡종재산의 유지관리
	17.	재물조사
	18.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관련 국가소송업무 수행
	19.	은닉국유재산 색출 및 소유권 확인 업무
	20.	차량구입 및 운영관리
	21.	차량 운전원 지도감독 및 관리
	22.	경영수익사업의 종합계획·발굴추진 및 민자유치
	23.	사계절썰매장 지도 감독
	24.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설치운영
	25.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26.	행정선 관리
	27.	부가가치세 부과·징수 총괄

부 서 명	분 장 사 무
	28.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29. 구청사 및 동청사 신축 설계용역, 공사시행 및 예산집행
	30. 동청사 증축 및 대수선 설계용역 및 공사 감독
	31. 청사 시설관리 위탁업체 및 청소 지도감독
	32. 구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증축·대수선 포함, 조경분야 제외)
	33. 구청사 시설물 관리용 자재 기구의 출납 보관
	34. 구청사 전기설비의 시설 및 유지관리
	35. 청사 소방 및 방화관리
	36. 그 밖의 타 실과에 속하지 않는 청사관리 사무
	37. 구 자금관리

구 본청 사무분장표 (제7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세무1과	1.	세무행정의 종합조정 및 통제
	2.	지방세 목표액 책정 및 징수전망 분석 총괄
	3.	지방세관련 조례 제·개정 및 폐지
	4.	지방세 운영평가 총괄
	5.	세정자료의 조사와 세정연감 작성
	6.	지방세의 수납, 집계 및 결산
	7.	지방세 관련 전산화 추진 및 운영관리
	8.	지방세 위원회 운영
	9.	과오납 조정 및 환불
	10.	채권관리 및 보고
	11.	구금고 계약과 구금고 및 수납기관의 지도감독
	12.	세무에 관한 제증명 발급 및 민원처리
	13.	수입증지 및 영수증서 관리
	14.	제증명 및 수수료 징수조례 요율조정
	15.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에 관한 사항
	16.	세외수입 수납, 집계 및 결산
	17.	세외수입 관련 전산화 추진 및 운영관리
	18.	세외수입 체납관리계획 수립 및 징수실적 보고
	19.	세외수입 체납자 채권압류
	20.	재산세 부과 및 독촉고지
	21.	제21호 세목에 관한 과세자료 조사 및 통보, 수리 처리
	22.	제21호 세목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및 소송사무 수행
	23.	건물 및 선박 등 시가표준액 조사
	24.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 및 시행
	25.	지방세 체납처분 및 체납자 관리
	26.	지방세 교부청구 및 징수 촉탁서 처리
	27.	지방세 결손처분 및 가산금 조정

부서명	분장사무	
	28.	관허사업 제한
	29.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0.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1.	신용카드 수납처리 및 관리
	32.	부동산 공매
	33.	자동차세 체납관리
	34.	체납차량 공매
	35.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 징수, 체납처분
	36.	재산세 관련 조례 및 규칙 제·개정

구 본청 사무분장표 (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세 무 2 과	1.	세무조사 계획수립 시행 총괄
	2.	자동차세, 취득·등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독촉고지
	3.	제2호 세목에 관한 과세자료 조사 및 통보, 수리 처리
	4.	제2호 세목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소송사무 수행
	5.	등록면허세,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부과 및 독촉고지
	6.	제5호 세목에 관한 과세자료 조사 및 통보, 수리 처리
	7.	제5호 세목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소송사무 수행
	8.	제5호 세목에 관한 지방세 관련 조례 제·개정 및 폐지
	9.	제5호 세목에 관한 지방세 위원회 운영
	10.	제2호 및 제5호 세목에 관한 목표액 책정 및 징수전망 분석
	11.	제2호 및 제5호 세목에 관한 지방세 운영평가
	12.	제2호 및 제5호 세목에 관한 세정자료 조사와 세표작성 및 통계
	13.	개별주택 가격 시가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14.	개별주택 가격 공시
	15.	공동주택 가격조사관련 업무

구 본청 사무분장표 (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민 원 봉 사 과	1.	민원상담
	2.	공인신조 및 폐기
	3.	공인사전날인 및 인영인쇄사용 승인
	4.	공인관리실태 지도점검
	5.	기록관(문서고) 운영
	6.	기록관운영에 따른 자료관리(생성, 열람)
	7.	민원서류(인허가, 진정, 즉결) 접수 및 수수료 정산
	8.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
	9.	대외전자문서 배부
	10.	전화민원 및 우편민원 접수
	11.	인터넷민원(구정에 바란다) 접수 및 배부
	12.	관인날인
	13.	문서사송
	14.	우편물 접수 및 발송
	15.	기록물 전산화 관련 업무
	16.	민원행정 개선
	17.	공무원 친절교육 등 관련 업무
	18.	여권 접수, 교부 및 심사
	19.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계획수립 및 시행
	20.	민권관련 제도 운영
	21.	종합민원신고센터 운영
	22.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운영
	23.	정보공개제도 운영
	24.	어디서나민원관련 업무처리 및 수수료 정산
	25.	민원24 민원접수처리 및 수수료 정산
	26.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관리
	27.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및 수수료 정산

부서명	분장사무
	28. 통합민원발급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재외국민 포함) 나. 인감증명 발급 다. 가족관계등록부 증명발급 라. 호적(제적) 등·초본 발급 마.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바.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사. 지적(임야)도 등본 발급 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자. 경계점좌표등록부 발급 차.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카. 건축물대장 발급 타. 제증명 발급 수수료 정산 파. 전입세대 열람
	29.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제증명 발급
	30. 국내거소자 거소지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제증명 발급
	31.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
	32. 호적(제적)원부 관리
	33. 가족관계등록 신고 접수 및 수리
	34.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기록
	35. 기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36. 인구동태
	37. 채무불이행자 명부 관리
	38. 결격사유 조회 및 회보, 수형인명표 관리
	39. 기록물관리실태 지도점검
	40. 기록물 평가 및 폐기
	41. 기록물 정리 및 이관
	42. 비밀문서 관리

구 본청 사무분장표 (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복 지 정 책 과	1. 구민복지시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3.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4. 지역사회복지사업의 기획·개발 및 시행
	5. 사회복지 시책홍보·교육
	6. 동 복지허브화 구축에 기반 조성
	7. 국가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8. 재향군인회에 관한 사항
	9. 생활안정자금 관리
	10.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11. 부랑인·노숙인 보호 및 시설지원
	12. 무연고 사망자 처리 및 공고
	13. 행여자 관리
	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관리
	1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6. 의사상자 신청
	17. 사회복지기금 관리·운영
	18.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19. 통합사례관리사업
	20.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21. 복지위원 관리 및 동 복지통장제
	22.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23. 동주민센터 복지사업지원 관리 및 평가
	24. 복지자원의 조사·개발·관리 및 배분
	25. 기부식품 제공사업 추진
	26.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27. 기초생활보장 생계, 해산, 장제급여 지급

부 서 명	분 장 사 무	
	28.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2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및 관리(결정 포함)
	30.	저소득한부모가족 조사 및 관리
	31.	차상위대상자 조사 및 관리(결정 포함)
	32.	장애인복지대상자(자립자금포함) 조사 및 관리
	33.	기초연금대상자 조사 및 관리
	34.	타법의료급여대상자 조사 및 관리
	35.	초중고학비대상자 조사 및 관리
	36.	임대주택사업대상자 조사
	37.	자산형성지원사업 조사 및 관리
	38.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조사
	39.	이웃돕기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40.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41.	복지분야 컨트롤타워 기능

구 본청 사무분장표 (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노 인 복 지 과	1.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변경
	2.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변경
	3.	장사업무 추진
	4.	노인복지업무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5.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6.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7.	경로당 운영지원 및 관리
	8.	노인건강진단
	9.	골드세대, 신중년 및 고령화정책 사업 추진
	10.	기초연금 지원 및 관리
	11.	독거노인지원 사업
	12.	노인회지회 지원 및 관리
	13.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14.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15.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구 본청 사무분장표 (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장 애 인 복 지 과	1.	장애인 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일반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도
	4.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5.	장애아동발달지원서비스 사업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7.	장애인 일자리 지원
	8.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신고
	9.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10.	기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11.	급여의 실시(생업자금 및 수업료 지원 등)
	12.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지원
	13.	장애인등록 업무
	14.	장애인 단체에 관한 사항
	15.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및 관리
	16.	중증장애인자립생활주택 지원 및 관리
	17.	자활지원계획 수립
	18.	자활기금계획 수립
	19.	자활기금 관리운영
	20.	자활사업 민간위탁기관 지원 및 관리
	21.	자활사업 민간위탁기관 지도 점검
	22.	조건부수급자 초기상담 및 배치
	23.	조건부수급자 확인조사 및 사례관리
	24.	차상위자활대상자 선정 및 관리
	25.	자활급여 지급 및 관리
	26.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관리
	27.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부 서 명	분 장 사 무	
	28.	생업자금 용자대상자 사후 관리
	29.	취약계층 자립지원 사업
	30.	자산형성사업 추진
	31.	의료급여 자격관리 및 급여지급
	32.	의료급여사 관리 및 지원
	33.	입양아동 및 노인, 장애인 의료급여 사업 지원
	34.	건강생활유지비 및 요양비 지급
	3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관리
	36.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37.	정신요양시설지원 및 지도감독
	38.	조건부 수급자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연계사업 추진

구 본청 사무분장표 (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교육 혁신 과	1.	교육지원 정책개발, 기획
	2.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3.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운영
	4.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5.	기타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
	6.	외국어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
	7.	외국어 특성화 사업 추진
	8.	평생학습 종합계획 수립·운영
	9.	평생학습 협의회 구성·운영
	10.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11.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12.	평생학습 조성에 관한 사항
	13.	관내 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14.	도서관 관리·운영 지원
	15.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
	16.	학교 무상급식지원
	17.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8.	청소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9.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
	2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21.	청소년위원회 운영
	22.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23.	어려운 청소년 보호육성
	24.	청소년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
	25.	청소년 특별지원
	26.	청소년 선도 및 계도
	27.	청소년단체의 지도 육성

부 서 명	분 장 사 무	
	28.	청소년 지도 및 생활상담 지도
	29.	청소년 어울마당행사 추진
	30.	청소년보호위반 업소 지도 및 단속
	31.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단속
	32.	과징금·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3.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관리
	34.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35.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관리
	36.	장학재단 운영 및 관리
	37.	교육분야 컨트롤타워 기능

구 본청 사무분장표 (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가 정 보 육 과	1.	여성복지연간계획 수립
	2.	직장내 성희롱 고충상담 및 조사
	3.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
	4.	직장 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5.	성별영향분석평가(법령, 계획, 사업) 추진
	6.	위원회 여성참여 관리
	7.	서구여성단체협의회 지원 및 관리
	8.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지원
	9.	여성가족분야 총무계획 수립
	10.	서구양성평등기금 관리 및 공모사업 추진
	11.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
	12.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관리
	13.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홍보사업 추진
	14.	건강가정, 양성평등 가족문화 조성사업
	1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16.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 추진
	17.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18.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19.	육아코디네이터 사업 운영
	2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
	21.	한부모가족 지원 및 보장결정
	22.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운영
	23.	행복출산 지원사업 추진
	24.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25.	결혼중개업소 등록 및 관리
	26.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운영
	27.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8.	구립어린이집 확충
	29.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부 서 명	분 장 사 무	
	30.	어린이집연합회 관리
	31.	영아·누리과정 보육료 보장결정 및 지급
	32.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보장결정 및 지급
	33.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리
	34.	지역사회 보육네트워크 구축
	35.	어린이집 운영지원
	36.	보육교직원 임면 및 자격관리
	37.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 추진
	38.	어린이집 수급계획 수립 및 신규·변경인가
	39.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사업 추진
	40.	어린이집 급식자재 공동구매 업체관리
	41.	특수·취약보육시설 지정 및 지원
	42.	공공형·인천형·열린어린이집 선정·지원
	43.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44.	어린이집 차입금 관리 및 용자보육시설 관리
	45.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리
	46.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지원
	47.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48.	부모모니터링 및 보육멘토 운영
	49.	보육솔루션위원회 운영
	50.	어린이집 연간 지도점검 계획 수립
	51.	어린이집 지도감독
	52.	어린이집 회계교육 운영
	53.	어린이집 안전(비상재해대비)시설 및 놀이시설 관리
	54.	인구정책관련 계획수립 및 지역맞춤형 시책발굴
	55.	저출산 대응계획 수립, 출산장려시책 발굴
	56.	출산분야 컨트롤타워 기능

구 본청 사무분장표 (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아 동 행 복 과	1.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생활가정 관리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가정위탁아동 책정 및 지원
	4.	소년소녀가정 등 요보호아동 지원
	5.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6.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8.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입양아동 등록 및 지원
	10.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
	11.	요보호아동 시설 입소 의뢰
	12.	아동수당 업무추진
	13.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14.	아동지킴이 운영
	15.	위기아동발굴
	16.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가입 및 지원
	36.	드림스타트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37.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38.	드림스타트 대상자 관리
	39.	드림스타트 복지 세부 프로그램 운영
	40.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
	41.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42.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43.	아이 돌봄사업 총괄관리
	44.	아동학대 현장조사

구 본청 사무분장표 (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문 화 관 광 체 육 과	1.	음반·비디오·게임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고 및 지도감독
	2.	문화재 보존관리 및 기타 관광에 관한 사항
	3.	지정문화재 자료보존 및 관리
	4.	비지정문화재(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5.	지방민속자료 발굴 조사
	6.	향토문화의 발굴 육성
	7.	문화예술용품의 생산 권장
	8.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설치 운영
	9.	검단복지회관·청라복합문화센터·국민체육센터·실내게이트볼장 지도감독
	10.	관할 구역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중 국가가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11.	기타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12.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13.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에 관한 등록 및 지도감독
	14.	관광편의시설업에 관한 지정 및 지도감독
	15.	공연장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6.	출판사 및 인쇄등록에 관한 사항
	17.	종교행정에 관한 사항
	18.	시·구민생활체육대회 추진
	19.	체육의 날 행사 추진
	20.	체육시설업의 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2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
	22.	체육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23.	체육진흥계획 수립
	24.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5.	녹청자박물관 관리 및 운영

부 서 명	분 장 사 무	
	26.	마실거리 야외무대 관리
	27.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28.	서구사 발간
	29.	국어책임관 업무추진
	30.	지명위원회 운영
	31.	서구문화원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32.	서구문화예술인회 지원
	33.	미술품 구입 및 관리
	34.	관광안내체계 구축
	35.	관광 시설물 설치 및 점검
	36.	관광활성화사업 추진 및 협의
	37.	유원시설업에 관한 허가·신고 및 지도감독
	38.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추진
	39.	서구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운영
	40.	장애인 생활체육지원 및 엘리트 선수 운영관리
	41.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추진
	42.	생활체육교실 운영
	43.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
	44.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처리 및 지도감독
	45.	스포츠 이용권 사업 추진
	46.	체육시설 내 푸드트럭 영업자 공모·선정 및 관리
	47.	롤러교실 운영
	48.	구민화합 체육대회 추진
	49.	체육단체 관리 및 운영
	50.	기관화합 체육대회 추진
	51.	여름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52.	문화재단 운영 및 관리

구 본청 사무분장표 (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클 린 도 시 과	1.	환경관리 민원처리
	2.	생활소음 관리
	3.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추진계획 수립
	4.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징수
	5.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징수
	6.	환경 사회복무요원관리
	7.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수리
	8.	환경관련 오염도검사자료 관리
	9.	환경관련 진정민원 처리
	10.	악취 배출업소 지도점검
	11.	비산먼지 억제 중장기 대책 및 시행
	12.	특정공사 사전신고 수리 및 지도점검
	13.	배출·방지시설 개선계획서 수리
	14.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15.	자동차공회전 단속
	16.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신고
	17.	이륜자동차검사 및 연장(유예)
	18.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발급
	19.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
	20.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관리자 지도·점검
	21.	악취배출업체 지도점검 및 고발, 행정처분
	22.	악취관리지역 관리
	23.	악취관리지역외 악취발생시설 관리
	24.	생활악취 관리
	25.	석면안전관리
	26.	석면피해구제

부 서 명	분 장 사 무	
	27.	환경오염종합상황실 운영
	28.	자동차/이륜자동차 정비사업장지정 업무
	29.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30.	인공조명 빛공해 관련 업무
	31.	악취관련 정책, 시책, 현안업무
	32.	환경분야 컨트롤타워 기능
	33.	통합관제센터 관리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환 경 관 리 과	1.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수리
	2. 무허가배출업소 지도단속
	3.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
	4.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
	5. 각종 중규모사업의 환경성 검토
	6. 환경보전 종합계획의 수립
	7. 환경기술인 교육
	8. 환경보전 대구민 홍보
	9.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및 운영
	1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
	11. 환경관리 민원처리
	12.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 조사
	13. 토양오염 실태조사
	14.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추진계획 수립
	15. 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고발,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16. 토양오염 유발시설 지도점검
	17. 하천오염행위 단속
	18. 환경 사회복무요원관리
	19. 환경관련 오염도검사자료 관리
	20. 환경관련 진정민원 처리
	21. 대기·수질 기본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22. 환경재난방지계획 수립 시행
	23. 수질·대기·환경오염자동측정망(TMS)운영
	24. 배출·방지시설 개선계획서 수리
	25. 환경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
	26.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조치(연안해양 포함)
	27.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28. 중수도,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29. 저수조청소업 신고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30.	환경관련 정책, 시책, 현안사항 업무
	31.	환경사범 수사 업무
	32.	환경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 수리
	34.	악취저감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35.	유해조수포획허가 및 수렵면허
	36.	야생동물 구호
	37.	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
	38.	환경책임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관리
	39.	먹는샘물공동시설(약수터)관리 및 수질검사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기 후 에 너 지	1. 기후변화종합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정 책 과	2.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3. 탄소포인트제 가입 추진(전기, 수도)
	4. 녹색구매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업무
	5. 기후환경네트워크 관련 업무 추진
	6. 그린스타트운동 추진
	7. 그린리더 양성 및 운영관리
	8. 환경교육 총괄
	9. 절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10.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11. 생물다양성관리사업
	12. 가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13. 가스 안전점검 사후관리
	14. 고압가스(제조, 판매, 저장소 설치, 용기·냉동기·특정 설비제조허가)에 관한 사무
	15. 고압가스업(운반자, 수입업자 등록)에 관한 사무
	16. 액화석유가스업(충전, 판매, 가스용품제조, 저장 허가)에 관한 사무
	17.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에 관한 사무
	18.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용 신고 및 가스사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
	19. 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20. 도시가스업(충전, 공급시설)에 관한 사무
	21. 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22. 가스안전관리 계도·홍보
	23. 석유판매업(주유소, 용제판매소, 일반판매소, 이동판매소)에 관한 사무
	24. 에너지 수급위기 극복에 관한 사무
	25.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관련사무
	26.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27. 기타 가스안전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명령
	28. 전력효율향상사업에 관한 업무
	29. 석탄가공업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본 장 사 무	
	30.	난방연료 지원사업(에너지바우처)에 관한 업무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생 태 하 천 과	1.	생태하천 복원사업
	2.	하천부지 점용허가
	3.	하천 수익자부담금 징수
	4.	건설사업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조정자료 작성
	5.	하천사용료 기본자료조사 및 부과징수
	6.	공유수면에 관한 사항(지정 항만구역외의 공유수면)
	7.	하수도 및 지하수사업 특별회계 운영(계약 및 지출에 관한 업무)
	8.	행정재산(구거)의 용도 폐지
	9.	도시계획사업(구거, 하천)에 따른 토지, 지장물 매수 및 보상에 관한 사항
	10.	미불용지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11.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12.	잔여지 보상에 관한 사항
	13.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14.	수용재결에 따른 입회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15.	건설공사(하천하수분야)의 시행 및 지도
	16.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17.	하수도 사용료 집계
	18.	지하수 사용량 검침
	19.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관리
	20.	하수도 사용계량기 설치 및 교체
	21.	하수도 종별 책정 및 변경
	22.	지하수 수질검사
	23.	지하수 개발에 관한 사무
	24.	공공하수도의 설치 개축 및 수선공사에 관한 사무
	25.	하천유지관리
	26.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27.	소하천 정비사업 대상지구선정

부 서 명	분 장 사 무	
	28.	소하천 정비사업 기술지도반 편성 운영
	29.	하천감시
	30.	공공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31.	공공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32.	공공하수도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33.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무
	34.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35.	지하수 이용부담금 체납액 관리
	36.	배수펌프장 관리
	37.	비점오염저감시설물 관리
	38.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
	39.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관련 조례, 규칙 제·개정
	40.	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관리
	41.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협의 및 준공검사
	42.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감독
	43.	개방화장실 지도 점검
	44.	재래식 화장실 개량 추진
	45.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및 관리
	46.	하천오염도 검사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안 전 총 괄 과	1.	구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
	2.	재난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검토·협의
	3.	재난관련 위원회 및 각종 규정 제·개정
	4.	민간자율 방재기능 강화 및 민간협력 지원
	5.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위험지역 지정 현장점검
	6.	안전관리체계 및 자원동원체계 구축
	7.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8.	이재민 관련 업무
	9.	피해원인 및 피해상황 조사·분석
	10.	국가기반시설 재난상황보고
	11.	사회복무요원 관리
	12.	민방위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13.	전시병무업무
	14.	총무계획의 지침작성과 조정통제
	15.	주민신고망 조직운영
	16.	재해 및 일반구호
	17.	재해구호물자의 출납보관 관리
	18.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19.	재난관련 교육 및 훈련 실시
	20.	재난관리기금 운용
	21.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
	22.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23.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관리
	24.	민방위 준비명령
	25.	민방위대 검열

부서명	분장사무	
	26.	민방위 시설물 관리
	27.	민방위 편성 및 교육 관리
	28.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사업
	29.	안전문화운동 전개
	3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1.	인적·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32.	안전·재난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 및 총괄 지휘
	33.	안전한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34.	통합관제센터 및 CCTV 구축·운영 종합계획 수립
	35.	확장서비스(u-Service) 및 지능형서비스 개발·도입
	36.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보수
	37.	개인영상정보보호에 관한 사무
	38.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39.	CCTV민원(새올, 반상회, 전화, 방문, 진정, 집단민원 등) 처리
	40.	관제인력 채용 및 관리
	41.	CCTV관련 부서·유관기관(시청 관련부서, 경찰, 학교) 업무협의
	42.	어린이범죄예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43.	여성안심구역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44.	지하 안전에 관한 사무
	45.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사업
	46.	재난안전분야 컨트롤타워 기능
	47.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자 원 순 환 과	1.	생활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
	2.	생활폐기물처리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3.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지도감독
	4.	환경미화원 관리
	5.	도로청소 및 청소차량 관리
	6.	청소장비 개선 및 관리
	7.	쓰레기종량제 추진
	8.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계약
	9.	생활쓰레기 수집·수수료 관리
	10.	재활용품의 회수처리 및 실적관리
	11.	재활용선별보관장 및 쓰레기선별처리장 운영
	12.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사업계봉투 관련업무
	13.	재활용 촉진 및 관련업무
	14.	의류 수거함 관리에 관한 사항
	15.	쓰레기 무단투기 처리 및 단속
	16.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관련업무
	17.	수도권매립지 및 청라소각장 관련업무
	18.	사업장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변경)
	1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변경)
	20.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 및 처리실적보고
	21.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관련 업무
	22.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신고(변경)
	2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신고(변경)
	24.	지정(감염성)폐기물 처리증명 확인(변경포함)
	25.	폐기물 연간 지도·단속 종합계획 수립
	26.	방치폐기물, 순환골재 관련업무
	27.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행정처분

	28.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업체 지도·점검
	29.	사업장 일반 및 건설폐기물관련 각종 민원처리
	30.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변경) 관련 업무
	3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업체 지도·점검
	32.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
	33.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신고(변경)
	34.	폐기물 전자인계서 관리 및 행정처분
	35.	폐기물 처리신고(변경)
	36.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업체 지도·점검
	37.	고형연료 제품 제조신고(변경)
	38.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39.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책 사업 추진
	40.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 대행 계약
	41.	화분형 거치대 관련 업무
	42.	음식물류폐기물 세외수입 징수
	43.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바코드 제작 업무
	44.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
	45.	음식물류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관리
	46.	음식물류폐기물 물류시스템 유지·관리
	47.	음식물류폐기물 대행료 지급
	48.	소규모 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49.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세척 업무
	50.	다량배출사업장 감량이행계획 신고처리
	51.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52.	다량배출사업장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리
	53.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주택 관리 운영 업무
	54.	음식물류폐기물 RFID 시스템 유지 및 관리
	55.	친환경 미생물 보급 및 관리 업무
	56.	청라자원화센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업무
	57.	음식물쓰레기 광역처리시설(청라.송도) 관련 업무

	58.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계산 연구 용역 업무
	59.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따른 세대수 관리
	6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공 원 녹 지 과	1.	조림 및 육림
	2.	산림보호
	3.	도시녹화
	4.	임산물가공 이용
	5.	중요 판매업 등록
	6.	산지정화
	7.	산불예방 및 진화
	8.	산림내 건조물 관리
	9.	산림 병충해 방지
	10.	산사태 예방·복구
	11.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
	12.	공유(시·구유)재산중 임야의 관리
	13.	사방
	14.	가로수 식재 및 관리
	15.	산지이용
	16.	임업통계
	17.	보안문서 생산관리 (총무계획)
	18.	공동주택 조경협회
	19.	산림 사회복무요원 지도관리
	20.	약수터의 주변(시설물등) 정비
	21.	공원·녹지 종합계획 수립
	22.	도시공원 조성
	23.	도시공원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24.	녹지조성
	25.	조경시설 유지관리(구청사 조경분야 포함)
	26.	도시공원 녹지점용 허가
	27.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 징수·부과

부 서 명	분 장 사 무	
	28.	도시계획사업(공원·녹지)에 따른 토지, 지장물 매수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9.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0.	미불용지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31.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32.	잔여지 보상에 관한 사항
	33.	미협외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34.	수용재결에 따른 입회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35.	시설녹지 조성에 관한 사항
	36.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37.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법적이행사항 (보험가입, 안전점검, 안전교육, 정기시설검사)
	38.	목재생산업 등록 및 관리
	39.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40.	임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41.	가로수·수벽 점용
	42.	시민 기념식수
	43.	시설녹지 유지관리
	44.	도시자연공원 구역 행위허가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경 제 정 책 과	1.	지역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
	2.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유지 및 보급
	3.	지역특산품 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지원
	4.	지방 물가지도 단속 및 동향관리
	5.	물가대책위원회 관리 및 개최
	6.	소비자 고발 센터등 소비자보호 전담기구의 운영관리
	7.	지역 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 시행
	8.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 수립 시행
	9.	대규모점포 개설(변경) 등록
	10.	대규모점포 관리자 지정
	11.	가격 표시제 지도단속
	12.	가격 표시제 실시업소 지정관리
	13.	우수토산품등의 개발보급
	14.	토산품등 생산기술 전승자의 발굴보호
	15.	소비자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
	16.	지방물가 안정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17.	농어업 및 식품산업육성에 관한 업무
	18.	농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업무
	19.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업무
	20.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업무
	2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22.	종자 및 비료에 관한 업무
	23.	양곡관리에 관한 업무
	24.	농수산물 유통 및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업무
	25.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업무
	26.	농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27.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업무
	28.	농업기반시설 관리 및 농림부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업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29.	FTA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업무
	3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1.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업무
	32.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3.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업무
	34.	식물방역에 관한 업무
	35.	식생활교육지원에 관한 업무
	36.	수산업에 관한 업무
	37.	낙시관리 및 육성에 관한 업무
	38.	내수면 어업에 관한 업무
	39.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업무
	40.	복권업소 지도. 단속
	41.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사무
	42.	대부업에 관한 사무
	43.	통신·방문·전화권유 판매업에 관한 사무
	44.	담배판매소매업에 관한 사무
	45.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46.	재래시장인정 등록 및 관리
	47.	어선관리에 관한 업무
	48.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업무
	49.	어촌어항에 관한 업무
	50.	소금산업진흥에 관한 업무
	51.	축산업에 관한 업무
	52.	송·변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무
	53.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무
	54.	가축 전염병 예방에 관한 업무
	55.	동물보호에 관한 업무
	56.	수의사에 관한 업무
	57.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
	58.	사료관리에 관한 업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59.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업무
	60.	말산업육성에 관한 업무
	61.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
	62.	축산자조금의 조성에 관한 업무
	63.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업무
	64.	초지관리에 관한 업무
	65.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무
	66.	지역화폐에 관한 사무
	67.	경제분야 컨트롤타워 기능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기 업 지 원	1.	노동행정의 계획 수립 시행
일 자 리 과	2.	노동단체의 지도 육성
	3.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
	4.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파악 및 지원
	5.	지방공업육성을 위한 종합기획 조정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가. 공장 신·증설 및 이전승인
		나.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아파트형공장 설립승인
		다. 공장등록 및 등록변경에 관한 사무
		라. 입지기준 확인에 관한 사무
		마. 공장 휴·폐업 신고 및 공장등록증명 발급
		바. 불법 공장 단속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육성지도에 관한 사무
	8.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의 선정추진
	9.	중소기업 창업 민원실의 설치운영
	10.	지식재산기반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11.	중소기업창업 관련 부담금 면제에 관한 사무
	12.	민속공예산업 육성계획수립 시행
	13.	공예품등 전문생산업체 지원
	14.	품질경영 촉진에 관한 사무
	15.	불법·불량 공산품 지도단속
	16.	해외 판로개척 계획 수립
		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관한 사무
		나. 해외박람회 참가에 관한 사무
		다. 해외 지사화 사업에 관한 사무
	17.	계량기에 관한 사무
	18.	계량증명업등록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19.	산업자원동원에 관한 사무
	20.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관한 사무
	21.	광공업에 관한 사무
	22.	공업지역 진흥 관련 사무
	23.	구조고도화 사무
	24.	생태산업단지 조성 사무
	25.	혁신산업단지 사무
	26.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
	27.	직업소개소 관련 업무
	28.	무허가 직업소개행위 단속
	29.	기업&일자리지원센터 운영
	30.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31.	고용복지+센터 운영
	32.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3.	공공근로사업 추진
	34.	기타 일자리관련 민원처리 상담
	35.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36.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추진
	37.	생활임금액 결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8.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
	39.	일자리창출 및 지원시책 발굴 추진
	40.	일자리사업관련 전산망 운영 관리
	41.	50플러스일자리에 관한 사무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식 품 산 업	1.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위 생 과	2.	공중위생업소의 영업(변경) 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 폐업 신고 처리
	3.	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 관리 및 행정처분
	4.	공중위생영업소 위생수준서비스 평가 계획 수립 및 추진
	5.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해촉 및 감시활동 관리
	6.	공중위생업소 육성 지원에 관한 업무
	7.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재교부)
	8.	이·미용사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9.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신고(변경) 처리
	10.	위생용품 제조업 품목제조보고 신고 처리
	11.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 지도 관리
	12.	위생용품 및 위생물수건 수거검사 실시
	13.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4.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5.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6.	식품소분판매업소(자동판매기, 기타식품판매업 등)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7.	유통식품관리(식품제조가공업 등) 종합계획 수립
	1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및 운영
	19.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설정 관리에 관한 사항
	20.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소 관리
	21.	자사제조용 및 외화획득용 원료수입 사후관리
	22.	유전자재조합식품 지도단속 및 수거·압류·폐기 등에 관한 사항
	23.	1399 민원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24.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관리 및 지급
	25.	이물 신고에 따른 소비·유통·제조단계 조사 업무
	26.	재래시장 위생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27.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부 서 명	분 장 사 무
	28. 식품위생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29.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30. 식품 및 공중위생관련 민원처리
	31. 식품 및 공중 무신고업소 단속 및 조치
	32. 행정 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
	33. 식중독 예방사업 관리
	34. 식품위생감시원증 발급 및 관리
	35. 식품 접객업소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
	36. 재난 배상책임보험 관련 업무 및 과태료 처분 업무
	37. 식품접객업소 영업허가(변경) 및 지위승계, 폐업신고 처리
	38.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 영업등록 및 지위승계, 폐업신고 처리
	39.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변경) 및 지위승계, 폐업신고 처리
	40.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영업신고(변경) 및 지위승계, 폐업신고 처리
	41.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및 변경, 종료신고 처리
	42. 식품품목제조 보고(변경)관리
	43. 조리사 면허증 발급
	44. 나트륨 저감사업 등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
	4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46.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47. 서구브랜드식품 지정관리
	48. 음식문화축제 개최
	49. 나트륨, 트랜스지방 저감화 사업
	50. 우수음식점(위생등급제, 모범음식점 등) 지정관리
	51. 식품진흥기금 운용 업무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교통정책과	1.	교통분야 컨트롤타워 기능
	2.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3.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4.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5.	교통공안협의
	6.	교통체계관리(T.S.M)지역사업 추진
	7.	교통관련 단체관리(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8.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에 관한 업무
	9.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10.	교통영향평가 심의진달
	11.	교통량 감축업무(교통유발부담금, 승용차 선택요일제)
	12.	버스노선개편에 관한 협의업무
	13.	교통취약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4.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지정 및 표지판 설치
	15.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사항(택시, 버스, 화물)
	16.	자동차정류장 설치에 관한 사항
	17.	총무계획(교통실시) 수립 및 시행
	18.	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사항
	19.	창고업(화물유통촉진법)에 관한 사무
	20.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에 관한 사항
	21.	대중교통(택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및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지도단속
	22.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에 관한 사항
	23.	교통불편신고 접수처리
	24.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 부과징수
	25.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교체 확인 관리
	26.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주선사업자 포함) 주기적 신고 처리

부 서 명	분 장 사 무	
	27.	사업용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
	28.	화물자동차 유류 복지카드 승인 처리
	29.	사업용 운수사업자(버스, 택시, 화물) 전국 전산망 등재
	30.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및 화물터미널 설치계획 추진
	31.	차고시설 신고업무
	3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 송치에 관한 사항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주 차 관 리 과	1.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운영
	2.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폐지
	3.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 개정, 폐지
	4.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5.	민간유희시설 주차장 설치 및 개방에 관한 사항
	6.	시설관리공단(공영주차장) 위탁 및 지도감독
	7.	기계식 주차장 지도감독
	8.	거주지 우선 주차제 및 그린파크 사업
	9.	공영주차장 체납요금 징수에 관한 업무
	10.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불법 주·정차 관련시설물(CCTV, 불법주정차금지표지판 등) 설치 및 관리
	12.	주차구획선 정비 및 관리(이면도로)
	13.	민영주차장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
	14.	건축물 부설 주차장 협의 및 지도감독
	15.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16.	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처리
	17.	화물자동차, 여객 및 건설기계 주차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18.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에 관한 사항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차 량 민 원 과	1.	자동차관리사업 종합계획 수립
	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업무
	3.	자동차점검 및 정비명령 등 자동차에 관한 사항
	4.	무허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단속 및 조치에 관한 사무
	5.	자동차의 개선명령
	6.	자동차정비관리자 선·해임 신고업무
	7.	차고시설 신고업무
	8.	사업장 이전시설 변경등록업무
	9.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
	10.	자동차관리사업의 행정처분
	11.	자동차관리사업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재결
	12.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의 제시요구등 책임보험에 관한 업무
	13.	자동차 책임보험등의 가입명령 및 가입사실 증명서류의 제출명령
	14.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사항 조회
	15.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16.	이륜차 구조, 장치의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17.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18.	책임보험미가입 차량 번호판 영치
	19.	법령위반차량 과태료 처분
	20.	무적, 무등록차량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단속, 조치에 관한 사항
	21.	자동차, 신규, 부활 등록
	22.	자동차 이전, 단순 변경등록
	23.	자동차 구조, 장치변경승인
	24.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25.	계속검사 경과차량 검사명령
	26.	법규위반차량 고발조치
	27.	자동차관련(등록, 검사) 과태료 부과, 징수, 체납처분

부 서 명	분 장 사 무	
	28.	자동차 제증명(등록원부, 말소) 발급
	29.	자동차 번호판 교부 및 회수
	30.	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 이의신청 처리
	31.	자동차 전산자료 관리
	32.	자가용 사용신고 처리
	33.	자동차 저당, 압류 등록 및 해제
	34.	자동차 봉인의 관리
	35.	자동차 검사, 점검 연기신청 처리
	36.	자동차관련 승인대장 관리
	37.	자동차 말소등록
	38.	자동차 등록증(봉인) 재교부
	39.	검사명령 불이행 차량 번호판 영치
	40.	건설기계 관련 업무
	41.	저속전기자동차 등록
	42.	저속전기자동차 운행(변경)허가·단속 및 과태료 부과
	43.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 및 징수에 관한 사항
	44.	무단 방치차량 강제처리 및 송치에 관한 사항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도 로 과	1.	자치구 건설종합계획의 수립
	2.	건설공사용 자재 및 기구 출납보관
	3.	도로수익자 부담금의 기본자료조사
	4.	도로부지 점용허가
	5.	도로 수익자부담금 징수
	6.	건설사업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조정자료 작성
	7.	국공유재산(도로)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도로점용 및 도로공작물제거 설치허가
		나.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8.	시설동원(일반토지, 건설업체, 중장비업체)등에 관한사항
	9.	전문건설업에 관한 사항
	10.	지하도경 상가유지관리
	11.	도로, 기본자료조사 및 부과징수
	12.	구도의 점용허가 및 도로굴착복구비, 점용료징수 (단, 2개구 이상해당되는 점용허가는 점용면적이 많은 구에서 타구와 협의 처리)
	13.	행정재산(도로)의 용도 폐지
	14.	도시계획사업(공원, 구거, 하천제외)에 따른 토지, 지장물 매수 및 보상에 관한 사항
	15.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미불용지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17.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18.	잔여지 보상에 관한 사항
	19.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20.	수용재결에 따른 입회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21.	도로관리계획 수립 시행 (도로폭 20미터 이하)
	22.	도로정비 및 수로원 배치관리
23.	건설공사(토목분야)의 시행 및 지도 (도로폭 20미터 이하)	
24.	도로표지판, 도로 부속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부서명	분장사무	
	25.	자치구가 시행하는 토목사업의 조사, 측량, 설계와 시공감독 (도로폭 20미터 이하)
	26.	도로폭 20미터 이하 도로노면 및 전체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27.	도로폭 20미터 이하 도로의 노선인정과 폐기 및 변경
	28.	도로폭 20미터 이하 사리도의 시설 및 유지관리
	29.	사도 개설허가
	30.	구청장 포괄사업비 관리
	31.	굴삭기 유지관리
	32.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
	33.	콘크리트 포장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34.	20미터 이하의 도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도로구역 결정
		나. 타 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다. 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라.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마. 설해대책계획 수립 및 시행
		바. 도로공사 계획의 공고
		사. 도로대장 작성 및 보관
		아. 접도구역의 지정 등
		자. 비 관리청 사업의 지도감독
	35.	도로경관 조성사업
	36.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
	37.	가로등, 보안등의 시설 및 유지관리
		가. 가로등시설물, 보안등 신설 및 교체
		나. 가로등시설물, 보안등 이설협의
		다. 도로조명시설 검사 및 안전점검
		라. 가로등시설물 인수 · 인계
		마. 가로등 교통사고 처리
		바. 가로등 굴착관련 업무
	38.	도심 보행길 환경개선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건 축 과	1.	건축행정의 종합조정	
	2.	건축행정 건실화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	신발생 위법건축물(무허가) 정비등에 대한 사무	
	4.	향측적출 위법건축물 조사 및 정비등에 관한 사무	
	5.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	
	6.	건축시공 및 지도감독	
	7.	건축물의 유지관리	
	8.	건축사 지도감독	
	9.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10.	위반건축물 고발 및 조치	
	11.	가설건축물 허가 및 관리	
	12.	건축통계 및 자료관리 보관	
	13.	공동주택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관리	
	14.	건축공사장 관리감독	
	15.	건축신고의 수리	
	16.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17.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	
	18.	신고사항의 변경수리	
	19.	신고예상 건축물(또는 공작물)의 건축	
		가.	착공신고의 수리
	20.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수리	
	21.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전환, 합병, 말소, 정정)	
	22.	등기필통지서에 의한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	
	23.	건축물사용승인에 의한 건축물대장 작성	
	24.	공용건축물 건축허가 및 협의	
	25.	공용건축물(구청사 및 동청사제외) 시설공사 예산 집행	
	26.	공용건축물(구청사 및 동청사제외) 신·증축 및 대수선 설계용역	
27.	공용건축물(구청사 및 동청사제외) 공사감독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주 택 과	1.	주택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2.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가. 사업승인
		나. 착공신고
		다. 사용검사
		라. 경미한 변경처리 및 사업계획 변경
		마.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바. 공사장 안전점검
		사. 임시사용 승인
		아. 감정평가 등록 및 의뢰
		자. 감리등록 및 변경관계
		차. 위반건축물 고발 및 조치
		카. 공동주택 감리자 지정
	3.	공동주택관리
	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나. 공동주택 하자보수	
	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	
	라. 위반건축물 고발 및 조치	
	마. 노후·불량주택(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바. 시특별대상건축물 안전점검	
	사.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아.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자. 주택관리업등록(변경)	
	카. 공동주택 감사·지도·감독	
4.	공동주택 관련 특수시책 업무	
5.	조합주택설립에 관한 사항	
	가. 설립인가	
	나. 조합신고	
6.	임대주택	
	가. 사업자 등록(변경)	
	나. 임대조건 신고	

부 서 명 1584	분 장 사 무 2021. 03. 15.()	
		다. 임대주택분양전환허가
	7.	재건축에 관한 사항
		가.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나. 사업시행인가
		다. 착공신고
		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마. 공사장 안전점검
		바. 사용검사
		사. 임시사용승인
		아. 감리등록 및 변경관계
		자. 위반건축물 고발 및 조치
	8.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9.	주거복지 관련
	10.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급
	11.	저소득가구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추천
	12.	저소득가구전세임대, 매입임대 입주대상자 추천
	1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제외)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도 시 재 생 과	1.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2.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 수립
	3.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무
	4.	주거환경개선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5.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6.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에 관한 사무
	7.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고수리
	8.	광고물 안전도 검사 실시 및 위탁
	9.	광고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10.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의 부과
	11.	옥외광고물업의 지도·관리
	12.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운영
	13.	광고물의 사후관리
	14.	불법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15.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16.	현수막지정계시대·시민게시판 위탁관리
	17.	도시재생분야 컨트롤타워 기능
	18.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구 본청 사무분장표 (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토 지 정 보 과	1.	토지관리업무 종합계획 수립
	2.	과 공인관리
	3.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4.	개발부담금 과태료 부과징수
	5.	개발부담금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6.	개발부담금 물납허가
	7.	개발부담금 분할납부허가, 납부연기허가
	8.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 결과 통지
	9.	개발부담금 거래가격신고
	10.	개발비용 처리 통보
	1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12.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3.	부동산중개사무소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 신고
	14.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고용관계 종료 신고
	15.	부동산중개업 휴업, 폐업 신고
	16.	중개사무소 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7.	부동산투기단속에 관한 업무
	18.	공인중개사법·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19.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 조사
	20.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21.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22.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23.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24.	과 예산, 회계 업무
	25.	지적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26.	지적공부 작성 및 재작성
	27.	지적측량 기초점(도근점) 보존 및 관리

부 서 명	분 장 사 무	
	28.	국가기준점 보존 및 관리
	29.	지적도근점 표석대장 정리
	30.	토지분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31.	토지이동처리(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32.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33.	토지이동지 일제조사
	34.	지적복구에 관한 업무
	35.	지적측량 성과검사
	36.	지적통계
	37.	지적측량장비 관리
	38.	측척변경
	39.	지적공부와 등기부와의 불부합사항 조사, 정리
	40.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41.	토지이동시 지적전산정리업무
	42.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관리 및 정리
	43.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신고
	44.	외국인 토지취득 계속보유 신고
	45.	토지기록전산시스템 관리
	46.	지적전산논리 오류정비
	47.	지적전산 오기 정정
	48.	미등기토지 주소등록 업무
	49.	국토정보센터 자료이용(조상땅 찾기)업무
	50.	KLIS 사용자권한부여 및 관리사항
	51.	KLIS 국가정보체계등록자료 관리
	52.	지적행정 사용자권한부여 및 관리사항
	53.	지적전산 정보관리
	54.	도시계획관련 제증명발급용 도면정리
	55.	토지거래계약 허가 업무
	56.	토지취득의 이용목적변경승인 업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57.	토지이용사후 실태조사
	58.	국토계획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59.	국토계획법 위반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60.	소유권정리 업무
	61.	국가소송수행
	62.	법인아닌 사단, 재단 등록
	63.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64.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65.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업무
	66.	주택거래신고 업무
	67.	부동산 등기과태료 부과·징수
	68.	지가산정 종합계획 수립
	69.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관리
	70.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71.	개별지가 열람 및 통보
	72.	공시지가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73.	지가정보의 관련기관 제공
	74.	지가조사반 편성운영
	75.	주민의견 접수 처리
	76.	의견제출지가 검증
	77.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78.	이의신청지가 검증
	79.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작성
	80.	국토교통부 지가 확인 요청
	81.	공시지가 결정
	82.	행정소송 수행
	83.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84.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85.	기반시설비용 과태료 부과·징수

부 서 명	분 장 사 무	
	86.	기반시설부담금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87.	기반시설부담금 몰납허가
	88.	기반시설부담금 분할납부허가, 납부연기허가
	89.	기반시설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 결과 통지
	90.	기반시설특별회계 자금관리·교부
	91.	기반시설부담구역 분석 지정·고시
	92.	기반시설설치계획 작성
	93.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94.	기반시설설치 비용산정
	95.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추진
	96.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 업무
	97.	도로명 주소 홍보
	98.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99.	도로명판·건물번호판 등 유지보수
	100.	도로명법 시행 전 추진사업 정비
	101.	도로명 주소 전산시스템 운영 및 정비
	102.	전국 도로명 주소 통합센터 민원처리
	103.	도로명 주소 예산업무
	104.	과내 체납액 정리
	105.	국토정보센터 DB 구축·운영
	106.	건물통합정보 통합 DB 구축·운영
	107.	수치지형도 수시갱신 체계 지원
	108.	공간정보 서버 운영
	109.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110.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업무
	111.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위원회 위원회 운영
	112.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
	113.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및 조정관리
	114.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및 공부정리

부 서 명	분 장 사 무	
	115.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조정금 운영관리
	116.	환지예정지증명원 발급
	117.	도로굴착 온라인시스템 협의 업무
	118.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119.	정책정보 제공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120.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운영·관리
	121.	공간정보(GIS) 운영
	122.	공간정보 분석 및 정책지도 제작
	123.	공간정보 행정주제도 제작 및 지원

[별표 2]

보건행정과 사무분장표(제9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보 건 행 정 과	1.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
	2. 당직근무 및 복무관리
	3. 예산운영 및 전도금 관리, 회계 지출관리
	4. 청사관리
	5. 비품 및 소모품관리
	6. 진단서 및 제증명발급
	7. 진료비 및 기타 수가의 징수
	8. 의료법에 의한 허가·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9. 약사법에 의한 등록신고 처리 및 지도·감독
	10. 마약류관리관한법률에 따른 신고 및 지도·감독
	11.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단속 고발
	12. 응급의료 법률에따른 허가·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13. 보건의료재난 대비 신속대응반 운영 및 훈련
	14. 헌혈권장 법률에따른 사항
	15. 온열 및 한냉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16. 명절 연휴 비상진료대책 수립 및 시행
	17. 검진의료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18. 임신부 등록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19. 난임부부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사항
	20. 국가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21. 취학전 아동실명 예방사업
	22. 모자보건사업 추진
	23.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24. 일반(양방) 및 한방진료에 관한 사항
	25. 물리치료에 관한 사항
	26. 기타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27. 각종 보건통계

감염병대응과 사무분장표(제9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감 염 병	1.	사무, 보안, 복무,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대 응 과	2.	예산 운영 및 회계·지출 관리
	3.	차량관리
	4.	물품 및 문서, 기록물 관리
	5.	감염병 대응 추진 및 총괄
	6.	인체감염 및 전파에 대한 방역대책 수립
	7.	방역약품 및 기재 관리
	8.	위생·해충 방제사업
	9.	감염병 예방접종 지도계몽 및 교육
	10.	감염병예방에 의한 법정 감염병 검사 및 환자 관리
	11.	X-RAY 촬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성병, 에이즈 등 만성감염병 관리
	13.	식중독 검사에 관한 사항
	14.	의료시혜등 1차 진료의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15.	보건환경연구소로부터 지시되는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16.	각종 질환발생에 따른 역학 조사에 관한 사항
	17.	노인 건강관리, 모자보건등 각종 건강 진단에 따른 이화학적 검사에 관한 사항
	18.	기타 방역에 관한 검사 및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19.	결핵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 사무분장표(제9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건 강 증 진 과	1.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
	2. 복무, 보안관리
	3. 예산운영 및 회계·지출 관리
	4. 차량관리
	5. 물품 및 기록물관리
	6.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각종 보건통계
	7.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
	8.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9. 운동, 영양 등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10.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전반
	11.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2. 구강보건 사업에 관한 사항
	13.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증진
	15. 의료장비 등 비품 및 소모품 관리
	16.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18. 운동, 영양 등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19. 금연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
	20.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21.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22.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23. 기타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24. 각종 보건통계
	25. 암 관리 및 암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26. 노인 안건강사업에 관한 사항
27.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28. 취약계층 일반검진 지원에 관한 사항
29.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30. 노인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1.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치매돌봄과 사무분장표(제9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치 매 정 신	1.	사무, 보안, 복무,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돌 봄 과	2.	예산 운영 및 회계·지출 관리
	3.	차량관리
	4.	물품 및 문서, 기록물 관리
	5.	노인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7.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8.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사업
	10.	치매 조기검진 사업에 관한 사항
	11.	쉼터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
	12.	치매 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3.	치매 인식개선·홍보 사업에 관한 사항
	14.	치매안심돌봄터 운영에 관한 사항
	15.	치매가족카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7.	자살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18.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9.	기타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20.	각종 보건통계

[별표 3]

출장소 사무분장표 (제11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검단출장소	1.	출장소내 행정의 종합조정
	2.	사무, 보안, 복무,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관리
	4.	회계관리 및 물품출납 보관
	5.	공보, 홍보, 문화재 보호관리, 출판, 향교, 사찰, 기타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6.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사무
	7.	공채·지방채에 관한 사항
	8.	공유재산관리
	9.	상수도, 자연보호, 수질보전에 관한 사무
	10.	농지개량에 관한 사무
	11.	환경, 위생, 산업, 상공에 관한 사항
	12.	지역개발에 관한 사무
	13.	건설에 관한 사무
	14.	건축에 관한 사무
	15.	자연재해 방재대책
	16.	보안등에 관한 사무
	17.	재산세 과세·징수
	18.	등록면허세 면허 및 등록(부동산·법인) 과세·징수
	19.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20.	지방세 체납관련 민원 처리 및 체납액 징수
	21.	취득세(부동산) 부과·징수(세무조사, 비과세·감면관리, 과점주주 제외)
	22.	관허사업 제한 및 철회
	23.	도시녹화
	24.	산불예방 및 진화
	25.	등산로 유지보수
	26.	가로수 식재 및 관리
	27.	공동주택 조경협회

부 서 명	분 장 사 무	
	28.	도시공원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29.	녹지조성
	30.	조경시설 유지관리(출장소 조경분야 포함)
	31.	도시공원 녹지점용 허가
	32.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 징수·부과
	33.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34.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법적이행사항 (보험가입, 안전점검, 안전교육, 정기시설검사)
	35.	가로수·수벽 점용
	36.	시민 기념식수
	37.	시설녹지 유지관리
	3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

의 건 제 출 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약개요	실·국별	제 출 의 건	검 토 내 용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470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서구청장 관장사무 중 출장소장에게 위임처리하는 사무를 추가하고, 관련 부서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별표 3)

- 세무1과, 세무2과

-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징수

- ⇒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

- 가. 면허분

- 나. 등록분 중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 (지방세법 제30조 및 32조)

- 경제에너지과 ⇒ 경제정책과

- 위생과 ⇒ 식품산업위생과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042, 팩스 032-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서구청장 관장사무 중 출장소장에게 위임처리하는 사무를 추가하고, 관련 부서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별표 3)
 - 세무1과, 세무2과
 -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징수
 - ⇒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
 - 가. 면허분
 - 나. 등록분 중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 (지방세법 제30조 및 32조)
 - 경제에너지과 ⇒ 경제정책과
 - 위생과 ⇒ 식품산업위생과

3. 참고사항

- 개 정 안 : “별지 참조”
-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관계 법령 발취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위생과”를 “식품산업위생과”로 한다.

별표 3 중 “실과별”을 “담당관·단·과”로, 세무1과 및 세무2과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3의 “위생과”를 “식품산업위생과”로, “경제에너지과”를 “경제정책과”로 한다.

담당관·단·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세무1과 세무2과	1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	- 「지방세기본법」 제79조	
	2	재산세 부과 징수	- 「지방세법」 제116조	
	3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		
	4	가. 면허분 나. 등록분 중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방세납세증명서 나.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다. 주택가격 확인서	- 「지방세법」 제35조 - 「지방세법」 제30조 및 32조 - 「지방세징수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7조	

별표 4 중 “실과별”을 “담당관·단·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개정 2017.12.20., 2020.12.14.)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담당관 단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총무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 제19조, 제20조 - 같은 조례 제21조 - 같은 조례 제22조 - 같은 조례 제23조	
재무과	1	물품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의 폐기	- 지방재정법 제100조 - 인천광역시서구물품관리 조례 제16조 - 같은 조례 제17조 - 같은 조례 제18조	
식품 산업 위생과	1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약국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나. 폐업 등의 신고 다. 약국제제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라. 보고와 검사 등 마. 시정명령 바. 업무 개시 명령 등 사. 폐기 명령 등 아.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 자. 시설개수명령 등 차.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카.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타. 청문 파. 약사감시원 임명 하. 등록증 등의 갱신 거. 과징금 처분 너. 과태료 부과·징수	약사법 제20조 같은법 제22조 같은법 제41조 같은법 제69조 같은법 제69조의4 같은법 제70조 같은법 제71조 같은법 제72조 같은법 제74조 같은법 제75조 같은법 제76조 같은법 제77조 같은법 제78조 같은법 제80조 같은법 제81조 같은법 제98조	
	2	건강증진계획의 수립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민건강계획의 세부계획수립 나. 주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 수립 보고 등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담당관 단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3	건강생활의 지원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	-같은 법시행규칙 제3조	
	4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5	보건교육의 실시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건교육 대상사업장, 의료기관, 단체에 대한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대한 자료 요청	-같은 법 제12조	
	6	구강건강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구조건강 실태조사 나.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7	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나. 영양관리 다. 구강건강의 관리 라.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마. 지역사회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바.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등	-같은 법 제19조	
	8	건강검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9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관련 사무 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변경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 나. 사회복지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다. 사회복지시설 설치의 폐쇄등 라.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소)심사 청구 등 마. 정신질환자의 퇴원(소), 임시퇴원(소), 처우개선 명령,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 등 바.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명령 사.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증 발급 아. 정신질환자 진단·치료비용	「정신보건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제29조, 제33조, 제 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담당관 단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범 규	비 고
		징수 및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10	건강검진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나.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명령 등 다. 청문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11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변경등록 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업무 개시 명령 등 바. 폐기 명령 등 사.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 아. 시설개수명령 등 자.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차. 등록취소 카. 청문 타. 등록증 등의 갱신 파. 과징금 처분 하. 과태료 부과·징수	약사법 제44조의2 같은 법 제44조의2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69조의4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6조의3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98조	
	12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 및 변경허가 등 나. 의약품유통품질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업무 개시 명령 등 바. 폐기 명령 등 사.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 아. 시설개수명령 등 자.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약사법 제45조 같은법 제47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7호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69조의4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6조	

담당관 단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차. 청문 카. 허가증 등의 갱신 타. 과징금 처분 파. 지위 승계 등 하.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제98조	
	13	의료기기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업 등의 신고 등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등 라. 사용중지명령 등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바. 과징금 처분 사. 청문 아. 의료기기 감시원 임명 자.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위촉 등 차. 과태료 부과·징수	의료기기법 제17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0조의2 같은 법 제56조	
	14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나. 폐업 등의 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 바. 청문 사. 과태료 부과·징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33조	
	15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나. 폐업 등의 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 바. 청문 사. 과태료 부과·징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33조	
	16	의료기사등의 면허증 회수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17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탁물 처리업 신고	의료법제16조,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담당관 단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범 규	비 고
		나. 세탁물처리실적 제출 다. 지도감독	같은 규칙 제9조 같은 규칙 제11조	
	18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부속기관의료기관(종합병원·요양병원의 부속의료기관 제외)의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의료기관의 휴·폐업신고 마.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자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바. 업무개시 명령 사. 보고와 업무 검사 등 아. 시정명령 등 자. 개설 허가 취소 등 차. 과징금 처분 카. 의료지도원 임명 타. 청문 실시 파. 과태료 (부과·징수) 하. 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거. 의료인 단체 설치 신고	의료법 제33조, 제35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19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휴·폐업신고 다. 보고와 검사업무 등 라. 시정명령 등 마. 청문실시 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점검	의료법 제82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	
	20	마약류취급자중 대마재배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의 대마초 재배에 대한 허가·변경 허가 등 나. 출입·검사와 수거 다. 폐기 명령 등 라. 업무 보고 등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바. 청문 사. 과징금처분 아. 과태료 (부과·징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69조	
	21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	

담당관 단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가. 시체의 해부에 필요한 사항 나. 시체해부 명령 다. 이상 발견 시의 조치 라. 과태료 (부과·징수)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21조	
	22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다.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및 취소 라.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마.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바.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사.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아. 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자. 다른용도에의 사용금지 차. 구급차 운행연한 카.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타. 구급차등의 지도·감독 파.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하. 청문 거. 과징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1조의 3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5조의 2 같은 법 제44조의 2 같은 법 제44조의 3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의 2 같은 법 제47조의 2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2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설치 · 운영신고 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을 통한 신고 등 다. 검사결과의 통지 등 라. 진단용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신고 마.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및 보존에 관한 사항 바. 지도감독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같은 규칙 제3조의 2 같은 규칙 제8조 같은 규칙 제10조 같은 규칙 제14조 같은 규칙 제16조	
	2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특수의료장비의 등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통보 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청 등 라. 검사결과의 등록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같은 규칙 제4조 같은 규칙 제4조의 2 같은 규칙 제7조	
	2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 감시원 임명 나.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같은 법 제49조	

담당관 단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범 규	비 고
	26	의료기관 개설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와 검사 등 나. 폐기 명령 등 다. 의약품 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	약사법 제69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	

[별표 3] <개정 2020.12.14.>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담당관단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문화관광 체육과	1	음악산업 관련 사업자의 신고·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의 신고·등록 나. 신고·등록 사항 변경 다. 신고 및 등록증 재교부 라. 폐업 및 직권말소 마. 행정조치(경고, 영업정지, 등록 취소·영업폐쇄, 과징금, 과태료, 폐쇄 및 수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6조	
	2	비디오물 관련 사업자의 신고·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의 신고·등록 나. 신고·등록 사항의 변경 다. 신고·등록증의 재교부 라. 폐업 및 직권말소 리. 행정조치(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영업폐쇄, 과징금, 과태료, 폐쇄 및 수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8조, 제60조 - 같은 법 제61조, 제6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같은 법 제64조 - 같은 법 제67조, 제68조, 제70조, 제99조	
	3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신고·등록·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의 신고·등록·허가 나. 신고·등록·허가 사항의 변경 다. 신고 및 등록·허가증 재교부 라. 폐업 및 직권말소 마. 행정조치(경고, 영업정지, 등록·허가취소, 영업장폐쇄, 과징금, 과태료, 폐쇄 및 수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 같은 법 제25조, 제26조, 제2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같은 법 제30조 - 같은 법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48조	
	4	공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연장의 등록 나. 공연장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폐쇄 조치, 영업정지, 과태료)	- 공연법 제9조 - 같은 법 제33조, 제34조	
	5	영화상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화상영의 신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2조	

담당관·단·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총무과	1	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8조, 제19조, 제20조 - 같은 조례 제21조 - 같은 조례 제22조 - 같은 조례 제23조	
재무과	1	구유 잡종재산의 관리 가. 실태조사 나. 대부료, 변상금 부과 및 징수 다. 미수액 체납관리 라. 기타전산입력 처리 등	- 지방재정법 제73조	
	2	물품불용 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의 폐기	- 인천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 제16조 - 같은 조례 제17조 - 같은 조례 제18조	
세무1과 세무2과	1 2 3 4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 재산세 부과 징수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 가. 면허분 나. 등록분 중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방세납세증명서 나.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다. 주택가격 확인서	- 지방세기본법 제79조 - 지방세법 제116조 - 지방세법 제35조 - 지방세법 제30조 및 32조 - 지방세징수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노인복지과	1 2 3	장례식장의 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자 등록현황 관리 나.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2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경로당 설치 등록 나. 경로당 변경, 휴·폐지 다. 경로당 운영지도 3 장사등에 관한 다음사항 가. 묘지등의 수급계획 수립 및 일제조사 나. 개인, 가족, 종중·문중을 대상으로 설치·관리하는 사설묘지, 화장장, 납골당, 납골묘, 납골탑의 신고·허가 및 사후관리 다. 무연분묘의 개장 및 처리 라. 묘지이전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등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9조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노인복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30조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같은 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 같은 법 제27조, 제28조, 제3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담당관·단·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식품산업 위생과	1.	공중위생영업(숙박, 목욕, 이용, 미용,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변경) 및 폐업 나.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다. 공중위생영업소지도단속 라. 관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같은 법 제3조의2 - 같은 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9조의2 -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2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허가 등 나. 영업 승계 다. 출입·검사·수거 등 라.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마. 벌칙	- 식품위생법 제37조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 -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102조까지	
자원순환과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변경) 신고 나.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지도감독 및 점검 다.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운반차량등록 및 반입수수료 등에 관한 협약」 업무 등 기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관련된 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36조, 제45조, 제4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60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 그 밖에 폐기물 관리법에 관련된 규정	
	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변경) 신고 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업체 지도 감독 및 점검 다.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운반차량등록 및 반입수수료 등에 관한 협약」 업무 등 기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와 관련된 사항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3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제61조,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규정	

담당관·단·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경제 정책과	1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 농지법 제8조	
	2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 분통지서 발급	- 농지법 제10조제1항	
	3	농지원부 작성 및 등본발급	- 농지법 제51조,제52조	
	4	일반소유 상환초과농지 소유인정서 발급	- 농지법 시행령 및 같은 법시행 규칙 제6조제1항	
	5	대리경작자의 지정	- 농지법 제19조제1항	
	6	자경증명 발급	- 농지법 제5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 칙 제54조	
	7	농지검사 및 조사	- 농지법 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57조	
	8	농지 전용신고	- 농지법 제37조제1항	
	9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전용 허가	- 농지법 제36조제1항	
기업지원 일자리과	1	공장입지 기준 확인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9조	
	2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장설립등의(신설,증설,업종 변경,이전)승인 및 변경승인 나. 공장설립승인사항 변경 신고 다. 제조시설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라. 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 변경신고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13조, 제20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4조의3 - 같은 법 제14조의3	
	3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	- 같은 법 제15조	
	4	공장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장등록 및 등록변경, 부분등록 나. 건축물 등록 다.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16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5	공장이전의 확인	- 같은 법 제21조	
	6	기존공장폐쇄 확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7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신설,증설 승인 및 변경승인 나. 완료(변경완료) 신고	- 같은 법 제28조의2 - 같은 법 제28조의2	
	8	공장설립대장 관리	- 같은 법 시행규칙제8조,제10조제4항	
	9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 나. 제조시설설치 승인취소 다. 공장의 등록취소	- 같은 법 제13조의5 - 같은 법 제14조의4 - 같은 법 제17조	
	10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사항	- 같은 법 제55조	

담당관·단·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건축과	1 2 3 4 5 6 7 8 9	1 위반건축물 단속 및 조치(고발포함)등(항측에 의한 위반건축물 제외) 2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 3 동당 연면적 1,000㎡이하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허가사항변경 4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신고사항변경 포함)신고의 수리 5 가설건축물 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 및 관리 6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7 건축(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착공신고의 수리 나. 사용승인서 교부 8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수리 9 건축물대장 관리 및 등본발급	- 건축법 제79조, 제81조, 제82조 - 건축법 제80조, 제80조의2, 제113조 - 건축법 제11조, 제16조 - 건축법 제14조, 제16조, 제19조 - 건축법 제20조 - 건축법 제83조 - 건축법 제21조 - 건축법 제22조 - 건축법 제36조 - 건축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도시재생과	1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나. 광고물등의 표시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다.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등에 관한 사항 라.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 관한 사항 마.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바. 옥외광고업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사.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의 취소 아. 영업정지등에 관한 사항 자. 허가·신고·안전도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차. 과태료의 부과 징수 카.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8조 - 같은 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8조 -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같은 법 제10조 -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제20조의2	

담당관·단·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공원녹지과	1 2 3	산불진화 숲길(등산로) 유지관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협의 (민간 및 공공기관 일체, 관리청:서구청장) 가. 가로수·수벽·중앙분리대 조성 유지 관리·이식 등 나. 전반사항 업무협의 및 점용·변상금 부과징수 다. 공공공지(수목분야), 광장(미관) 협의 및 추진	- 산림보호법 제33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2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1조	- 등산로 유지보수 (국비사업, 단위사업 제외) - 대규모 도 시개발사업 협의 제외

[별표 4]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담당관단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총 무 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18조, 제19조, 제20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2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 (다만,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구 청장이 처리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24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세 무 1 과	1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목별과세증명서 나. 지방세납세증명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노인복지과	1	매·화장 및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8조	
장애인복지과	1	의료급여대상자 증명발급	-의료급여법 제8조제1항	
가정보육과	1	한부모가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저소득한부모가정 신규신청자 초기상담 나. 저소득 한부모가정 일제조사 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학비 지원, 변동사항 확인 라. 저소득 한부모가정 변동사항 관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2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담당관단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자원순환과	1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한 권한 가. 봉투판매소 지정 및 취소 나. 봉투판매소 변경사항 신고		
	2	동 배치 환경미화원 관리감독		
	3	이면도로 청소업무	-폐기물관리법 제4조, 같은 법 제13조	
	4	주택가 무단투기 단속업무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동 조례 제9조의 3, 동 조례 제17조	

의 건 제 출 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약개요	실·국별	제 출 의 건	검 토 내 용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471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시장으로부터 서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추가하고, 관련 부서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안 별표 3)
 - 세무2과
 - 1. 취득세 부과 징수
 - 가. 부동산 (세무조사, 과점주주, 감면사후관리 제외)
 - 경제에너지과 ⇒ 경제정책과
 - 위생과 ⇒ 식품산업위생과
 - 도시기반과 ⇒ 도로과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2,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시장으로부터 서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추가하고, 관련 부서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안 별표 3)
 - 세무2과
 - 1. 취득세 부과 징수
 - 가. 부동산 (세무조사, 과점주주, 감면사후관리 제외)
 - 경제에너지과 ⇒ 경제정책과
 - 위생과 ⇒ 식품산업위생과
 - 도시기반과 ⇒ 도로과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실과별”을 “담당관·단·과”로, “위생과”를 “식품산업위생과”로 한다.

별표 3 중 “실과별”을 “담당관·단·과”로, 같은 표 중 노인복지과 전에 세무2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경제에너지과”를 “경제정책과”로, “도시기반과”를 “도로과”로 한다.

담당관·단·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세무2과	1	취득세 부과 징수 가. 부동산 (세무조사, 과점주주, 감면사후관리 제외)	- 「지방세법」 제20조 및 제21조	

별표 4 중 “실과별”을 “담당관·단·과”로, “경제에너지과”를 “경제정책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7.12.20.)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담당관· 단·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규	비고
식품 산업 위생과	1	성매매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시 건강진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성매매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5조	
	2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 부속병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허가 및 사항변경	의료법제33조	
	3	마약류 도.소매업자,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나.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 다.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라. 마약류 양도의 승인 마. 구입서 및 판매서 교부 (마약류 도매업 제외) 바.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사.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아. 허가 등의 제한 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차. 출입,검사 및 수거 카. 폐기명령 등 타. 업무보고 등 파.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하.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거.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가 된 때 및 법인이 해산한 경우 신고 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 등의 판매승인 더. 마약의 도매보고 러. 마약의 소매보고 머.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 버. 청문 서. 과징금 처분 어. 과태료 부과.징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제9조 제2항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제8조제3항 및 제5항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69조	

4	<p>감염병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역학조사</p> <p>나. 건강진단</p> <p>다.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등</p> <p>라. 감염병위기사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등</p> <p>마. 감염병 관리 시설 평가</p> <p>바.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p> <p>사.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p> <p>아. 감염병 환자등의 입원 통지</p> <p>자. 감염병유행에 대한 방역조치</p> <p>차. 감염병의 예방 조치</p>	<p>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p> <p>같은 법 제19조</p> <p>같은 법 제36조</p> <p>같은 법 제37조</p> <p>같은 법 제39조의 2</p> <p>같은 법 제41조</p> <p>같은 법 제42조</p> <p>같은 법 제43조</p> <p>같은 법 제47조</p> <p>같은 법 제49조</p>	
5	<p>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p> <p>나. 예방접종의 공고</p> <p>다.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p> <p>라. 예방접종증명서 교부</p> <p>마.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p>	<p>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p> <p>같은 법 제26조</p> <p>같은 법 제26조의 2</p> <p>같은 법 제27조</p> <p>같은 법 제28조</p>	
6	<p>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p> <p>나. 영업의 휴업, 폐업, 폐업신고</p> <p>다. 영업정지 및 영업취소</p> <p>라. 소독업자에 대한 기타 행정처분</p> <p>마. 소독업무의 대행명령</p> <p>바. 소독실적 보고</p>	<p>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p> <p>같은 법 제53조</p> <p>같은 법 제59조</p> <p>같은 법 제58조</p> <p>같은 법 제56조</p> <p>같은 법 제57조</p>	
7	<p>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감염자의 치료권고</p> <p>나. 감염자의 치료 및 보호조치등</p>	<p>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p> <p>같은 법 제14조</p> <p>같은 법 제15조</p>	
8	<p>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p> <p>가. 임신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p> <p>나. 산후조리업 신고</p>	<p>모자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p> <p>같은 법 제15조</p>	

[별표 3]

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관련)

담당관·단·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세무2과	1	취득세 부과 징수 가. 부동산 (세무조사, 과점주주, 감면사후관리 제외)	- 지방세법 제20조 내지 제21조	
노인복지과	1	공설묘지의 운영관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경 제 정 책 과	1	양곡가공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대규모 도정업에 관한 권한제외) 가. 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나. 청문 다.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권한 라. 과태료 부과징수	- 양곡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농지법시행령 제39조	
	2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중 농지전용신고 대상의 협의에 관한 사항	- 농지법 제44조	
	3	불법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 농지법 제38조	
	4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권한		
기업지원 일자리과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나.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다.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제28조	
	2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의 명령 나.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처리 다. 자체수리자의 지정 및 변경신고의 처리 라. 수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 마. 폐업 등의 신고 수리 바. 등록·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사. 정기검사 아. 수시검사 자.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차.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카. 정량의 표시 명령 및 표시의 정정 요구 타. 조사 파. 계량기 표시의 개선명령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 같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 -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 -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 같은 법 제12조제1항 - 같은 법 제13조제1항 - 같은 법 제30조제1항 - 같은 법 제31조 - 같은 법 제32조제1항 - 같은 법 제33조제1항 - 같은 법 제42조제1항 - 같은 법 제50조제1항 - 같은 법 제52조제1항	
	3	검단지역 산업단지 관리업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는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담당관·단·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도 로 과	1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2개구이상 해당되는 점용허가는 제외) 가. 도로점용허가 나. 도로예정지 점용허가 다. 접도구역관리 라. 도로부지점용 권리·의무 승계신고 마.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바. 도로점용지의 원상복구 면제승인 사. 도로점용공사의 대행 아. 공작물 설치허가(시도 및 준용도로에 한함) 자. 도로환경정비 차. 도로부지점용(굴착)허가	- 도로법 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106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50조 - 같은 법 제66조 - 같은 법 제73조 - 같은 법 제65조 - 같은 법 제61조 - 같은 법 제50조 - 도로법 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2	풍수해 응급대책을 위한 시설물자의 사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	
	3	도로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도로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 제1호·제4호 중 차도·보도·측도·배수로·길도랑 유지관리 나. 사도개설허가 다. 도로의 유지·안전점검·보수 등(도로, 비포장도로, 긴급복구, 설해대책)	- 도로법 제31조 - 사도법 제4조 - 도로법 제50조	
	4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 도로법 제24조	
생 태 하 천 과	1	공공하수도의 유지와 공사 가. 폭 20M미만 도로의 하수도유지 및 공사관련 사항 나. 연면적 1,000㎡이하 건축허가에 따른 공공하수도 및 배수시설물의 사용 및 유지와 공사에 관련한 사항	- 하수도법 제7조 및 제8조	
	2	하수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나. 공공하수도의 감독	- 하수도법 제20조 - 같은 법 제37조	

[별표 4]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담당관·단·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경제 정책과	1	가축방역 추진사항 가. 광견병등 방역대상 조사 나. 광견병 예방접종등 방역추진 다. 예방접종 결과보고 등 기타사항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의 건 제 출 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별	제 출 의 건	검 토 내 용

